

해외 보험동향 2020년 가을호

| 총괄

김석영 (선임연구위원)

| 해외 보험동향

이상우 (수석연구원)

이소양 (연구원)

손민숙 (연구원)

장윤미 (연구원)

손지영 (연구원)

■ 목차

I.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1. 대만 예금보험 제도 변화 / 1
2. 인도, 소비자 직접 서명 없이 보험상품 판매 가능 / 3
3.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보험상품 온라인 판매 허가 / 4
4. 미국 차별금지 이슈 / 5
5. 유럽 금융서비스 분야 디지털 전략 / 8
6. 일본 금융상품 플랫폼사업 관련법 제정 / 11
7. 중국 보험시장 대외개방 확대 및 외국 보험회사의 기회 / 14
8. 중국 자동차보험 제도개혁 및 전망 / 17

II.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1. 미국 신용기반 보험점수 / 20
2. 이케아 HEMSÄKER와 생태계 경제에서의 보험 / 22
3.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괴롭힘·갑질 보험상품 개발 확대 / 24
4. 싱가포르, 고액자산가를 위한 생명보험회사 지점 설립 / 26
5. 호주 정신질환 관련 주별 정보 공개 / 27
6. 코로나 단신 / 30

[특집]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이슬람 보험(타카풀) 비교 / 33

[특집] 해외 판매채널: 일본편 / 41

[부록] 해외 보험산업 통계 / 52

I.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1. 대만 예금보험 제도 변화

■ 대만은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기본적 이익을 보장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든 보험안정기금 제도를 꾸준히 수정해왔음

■ 대만 보험안정기금은 2009년 7월에 기존의 생명보험안정기금 및 손해보험안정기금 통합으로 출범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보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¹⁾

○ 기존의 생명보험안정기금 및 손해보험안정기금은 2001년 6월에 각각 설립돼 두 개의 조직으로 운영됐으며, 이들의 전신은 각각 생명보험안정기금위원회 및 손해보험안정기금 위원회였음²⁾

○ 대만 금융당국은 “재단법인 보험안정기금의 조직 및 관리 방법”을 수정하여 두 기금을 합병시키는 동시에 이 기금을 관리하는 전문조직을 설립함

- 그러나 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계좌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음

■ 대만 보험안정기금은 사전적립방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으며 2014년 7월부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경영성과 등급을 고려한 차등요율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

○ 2014년 7월 이전까지 대만 재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만 보험안정기금은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각각 총수입보험료의 1/1,000 및 2/1,000로 보험료를 부과함

1)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보험국 연대표
(<https://history.fsc.gov.tw/Events?type=%E4%BF%9D%E9%9A%AA%E5%B1%80>)

2) 생명보험안정기금위원회는 1974년 4월 대만 재정부가 보험회사 파산이 금융시스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 뉴욕 주의 예금보험 제도를 모델로 설립함. 손해보험안정기금위원회는 1993년 1월 대만 금융당국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회사 지급불능 방지를 위하여 보험업에서 보험안정기금 설립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설립됨

- 2014년 7월부터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위험추구성향을 억제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과 경영성과의 등급을 고려한 차등요율제도를 도입함
- 대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등급은 지급여력비율의 분포 구간에 따라 결정되고, 경영성과 등급은 5대 분야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됨³⁾
 -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지급여력 비율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함
 - 보험회사 경영성과의 등급은 성과지표별 평점에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곱해 산출된 점수의 분포 구간에 따라 결정됨⁴⁾

■ 최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장애인전용보험과 고령자 소액보험의 공급 확대를 위해 보험안정기금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성과 평가내용을 계속 수정함

- 2017년 7월 경영성과 평가 항목에 초년도 수입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로 설정된 장애인 전용보험과 고령자 소액보험 지표를 신설함⁵⁾
- 2018년 1월 장애인 전용보험의 초년도 수입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기준을 하향 수정하고 고령자 소액보험의 초년도 수입보험료 기준을 상향 수정함⁶⁾
- 2020년 1월 장애인전용보험과 고령자 소액보험 지표를 2차 수정함⁷⁾
 - 수정된 장애인전용보험과 고령자 소액보험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전용보험과 고령자 소액보험의 판매가 증가할 경우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보험안정기금의 보험료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안정기금 제도에 대한 수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보험서비스 강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상품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대만은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자가 늘어나고 고령으로 인한 장애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3)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保險業資本適足性管理辦法”

4) 경영성과는 위험관리, 재무구조, 주요업무, 법규 준수 및 정보 안정을 평가함. 경영성과 점수는 100, 95, 85, 70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함

5)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2017. 7), “金管保財字第10602503271號”

6)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2018. 1), “金管保財字第10602506661號”

7) 대만 보험안정기금(2020. 1), “修正人身保險及財產保險安定基金計提標準”

- 대만은 1993년 고령화 사회, 2018년 고령 사회로 전환해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⁸⁾
- 2019년 대만의 장애인 총수는 1,186,740명으로 총인구의 5.03%를 차지하여 2000년 2.63% 이후 계속 상승함⁹⁾

2. 인도, 소비자 직접 서명 없이 보험상품 판매 가능

■ 인도보험감독및개발청(IRDAI)은 소비자의 직접 서명 없이 동의 표시가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 판매를 허용함¹⁰⁾

- 인도에서는 기존에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 통해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해왔으며 소비자의 직접 서명이 필수였음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물리적인 활동이 제한을 받자 인도 생명보험회사는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직접 서명 없이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이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옴
- 이에 따라 인도 당국은 기존 관행(소비자 직접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 표시 방식 또한 허용하게 됨

■ 생명보험회사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고객의 동의를 확보함

- 보험회사는 고객의 등록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링크가 포함된 상품 제안서를 메시지 형태로 전송함
- 고객이 제안서에 동의할 경우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유된 OTP를 통해 동의를 표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유효 증거로 보관함
- 대리인/중개자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승인된 판매 기구(Sales Materials)만을 사용함

■ 생명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함

8) 대만 국가발전위원회(<https://pop-proj.ndc.gov.tw/chart.aspx?c=10&uid=66&pid=60>)

9) 대만 복지부통계처(<https://dep.mohw.gov.tw/DOS/cp-2976-13815-113.html>)

10) https://www.irdai.gov.in/ADMINCMS/cms/whatsNew_Layout.aspx?page=PageNo4210&flag=1

- 보험 대리인/중개인에게 승인된 디지털 판매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은 고객 모집 시 해당 자료만을 사용함
- 보험회사는 잠재 고객의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중복 가입 발생을 방지함
- 상품은 저축과 관련된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 위험 보장 목적의 상품으로 한정됨
- 동 허용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함

3.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보험상품 온라인 판매 허가¹¹⁾

■ 2020년 4월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협회(AAJI)는 금융규제당국에 생명보험회사와 잠재 고객 간의 대면 접촉을 대체하는 판매채널 허용을 요청한 바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금융규제당국에 직접 서명을 대체하는 디지털/전자적 방식 허용을 촉구함

■ 2020년 5월 29일 인도네시아 금융규제당국은 투자 관련 보험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함

- 기존에는 투자 관련 보험 상품(PAYDI¹²⁾) 혹은 변액보험 판매 시 직접 대면과 소비자 직접 서명이 필수였음
- 제도 변경으로 투자 관련 보험상품 판매 시 화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이 허용됨
- 또한 보험계약자의 직접 서명은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 가능함
 - 전자 서명을 통해 보험 가입자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비용과 리스크 및 혜택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디지털을 통한 투자 관련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함

- 보험회사는 기밀성을 보장하는 정보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춰야 하며 정보는 보안되어야 함
- 보험회사는 정보 기술 공급 업체와 위험 관리 담당 책임자로부터 정보 시스템과 인프라가 적절하다는 진술서를 수취해야 함

11) <https://www.ojk.go.id/id/berita-dan-kegiatan/siaran-pers/Pages/Siaran-Pers-Kebijakan-Stimulus-Lanjutan-Bagi-Industri-Kuangan-Non-Bank-.aspx>

12) PAYDI(Produk Asuransi Yang Dikaitkan Dengan Investasi)는 'Investment-linked Insurance Products'의 인도네시아 약어임

- 보험회사는 디지털 또는 전자 마케팅을 지원하는 운영 표준 및 절차를 갖춰야함
 - 보험가입자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빙은 비디오 및 오디오 녹음을 통해 이루어짐
- 보험회사는 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4. 미국 차별금지 이슈

가. 성소수자

- 2020년 6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건강관리 및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에 대한 차별 금지 보호 규칙을 변경함¹³⁾
 - 해당 규칙은 ACA(Affordable Care Act)의 Section 1557에 명시된 성차별 보호에 중점을 둔 것임
 - 연방법은 특정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함
 - 이전 오바마 행정부 규칙에서는 ‘성’에 대한 보호를 ‘남성, 여성, 둘 다 또는 남성과 여성의 조합’으로 정의된 성 정체성에 기반한 보호로 정의하고 있음
 - 2019년 6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HSS OCR(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ACA에 따라 보호되는 성 범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 6월 해당 규칙을 최종적으로 변경함
- 트럼프 행정부의 변경안은 ‘성차별’을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성소수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임
 - 트럼프 행정부와 지지자들은 새로운 규칙이 ‘성차별’의 법적 의미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13) HSS OCR(2020. 6. 12), “HHS Finalizes Rule on Section 1557 Protecting Civil Rights in Healthcare, Restoring the Rule of Law, and Relieving Americans of Billions in Excessive Costs”

각종 병원, 보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이러한 변경안은 건강 보험에 대한 접근과 관련 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요 주(州) 보험국은 해당 규칙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함

○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Ricardo Lara는 모든 캘리포니아 보험사를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철폐하는 규칙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차별 금지법을 계속해서 준수할 것을 통지함

-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언어 능력에 관계 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발표함

○ 뉴욕 주의 금융서비스국장 Linda A. Lacewell은 연방 정부의 LGBTQ 보호 규정 변경에 대응하여, LGBTQ 뉴욕 주민들을 의료 분야의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의 책임과 관련된 지침을 발표함

- 위의 지침에 따른 조치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트랜스젠더 상태를 포함하도록 ‘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함

- 2020년 7월 28일 발효되는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의 피보험자 또는 예비 피보험자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성전환자 신분에 근거한 차별이 금지됨

나. 성별

■ 2019년 1월 1일 당시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Dave Jones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개인 자동차 보험 등급 산정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효함¹⁴⁾

○ 성차별 방지 규제로 2012년에는 피보험자 또는 예비 피보험자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 거부 및 청구 거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함

○ 또한, 당시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Dave Jones는 2009년 하원 의원 시절 건강 보험 가격 책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Assembly Bill 199)을 제정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성별에 따른 보험 가격 책정을 폐지한 이력이 있음

14) 캘리포니아 주 보험감독청(2019. 1. 3), “Commissioner issues regulations prohibiting gender discrimination in automobile insurance rates”

○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모든 자동차 보험회사가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로 성별을 사용하지 않는 개정된 등급 계획을 제출해야 함

■ 2020년 6월 30일부터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성별 중립적 요율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소비자들은 위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별 등 통제할 수 없는 개인적 특성이 아닌 지역, 보험 적용 범위 및 유형, 면허 연도, 운전 기록, 연간 마일리지, 차량 유형 등을 입력하여 회사 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음

○ 보험료는 운전자의 기록, 과실 사고, 교통 위반 및 운전경험 등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바탕으로 결정됨

○ 위의 비교는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회사 간 보험료 비교를 제공하는 것이며, 비교를 통해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은 아님

다. 인종

■ 2015년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의 연구에 따르면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70%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남¹⁵⁾

○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소지의 평균 보험료(1,797달러)는 백인 주소지의 평균 보험료(1,126달러)에 비해 6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골 지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소지의 평균 보험료(669달러)는 백인이 대다수인 시골 지역의 평균 보험료(542달러)에 비해 2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은 미국소비자연맹의 연구 결과에 대해 미국손해보험협회(American Property Casualty Insurance Association)는 자동차 보험료 결정 시 인종 또는 소득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 2005년 텍사스 보험국의 연구와 2015년 미네소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신용기반 보험점

15) 미국소비자연맹(2015. 11. 18), "Major Auto Insurers Charge Good Drivers 70% More in African American ZIP Codes than in White ZIPs"

수는 인종과 소득에 근거하지 않으며, 개인의 신용 기록은 미래의 보험 청구 및 그 청구의 잠재적 비용을 도출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됨

- 또한, 디트로이트와 같은 대도시 중심부의 손실 비용은 북부나 교외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주 전체 평균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의 더 높은 보험료를 설명하는 근거가 됨

■ 그러나 이후 이어진 후속 연구에서 보험요율 및 보험료 결정 과정에서 인종에 따른 구조적 차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Propublica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보험회사가 유사한 위험을 가진 소수자 집단에게 비소수자 집단(백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부당한 보험료 차별은 일리노이 주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캘리포니아, 텍사스, 미주리에서도 유사한 보험료 불균형 사례들이 발견됨

■ 2020년 7월 미국 보험감독자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Insurance Commissioners)는 인종 및 보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구조적 인종 차별에 대응하기로 함

- 위원회는 보험 부문의 다양성을 촉진하며 인종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보험 분야의 포용성과 다양성 수준을 분석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함

5. 유럽 금융서비스 분야 디지털 전략

■ 프랑스 금융시장청(AMF: 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이하, 'AMF'라 함)은 유럽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위해 유럽 금융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략을 발표함

-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럽(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은 유럽위원회가 향후 5년간 추구하기로 한 6가지 우선 주제 중 하나로 선정됨¹⁶⁾

○ 디지털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유럽의 금융시스템은 비효율적이며, 금융 환경 및 규제에 따른 높은 진입장벽으로 경쟁력 향상 및 금융 혁신이 어려움

- 현재 금융시스템에서는 고객들이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부족하며, 전반적인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 비효율적임
- 장기 저금리 환경으로 인한 마진 압박과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규제 비용은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하였으며, 엄격한 규제는 신규 회사의 진입장벽을 높여 금융 혁신을 저해함¹⁷⁾

○ AMF는 금융 효율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및 데이터 사용에 주목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위해서는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유럽 금융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략을 모색함

- 블록체인 개발 관련 법적 문제 해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EU 차원의 규제 및 감독 완화 등이 검토됨

■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블록체인 인프라 정착 및 블록체인 기술과 호환 가능한 안정적인 결제 수단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법적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함

○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은 ① 특정 금융업무의 비용 절감, ② 스마트 계약¹⁸⁾ 활용에 따른 후 거래 프로세스 자동화, ③ 시간 단축, ④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및 고급암호기법을 결합한 거래 보안 강화, ⑤ 유동성 증가와 신규 자산계급 출현 및 육성 등의 장점이 있음

○ 블록체인과 호환되는 결제 수단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함

- 현행법은 증권결제 시스템 담당 관리자의 식별이 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운영책임자 인식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활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음
- 증권 등의 결제 및 정산에 신용기관 또는 투자회사와 같은 중개인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의 직접 접근을 허용하지 않음
- 증권거래 시 현금결제를 의무로 하여 블록체인 활용이 불가함

16) Ursula von der Leyen(2019. 10. 9), "A Union that strives for more-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EU publications

17) 2018년 글로벌 자금조달 비중에서 유럽 스타트업 비중이 10%에 불과하였으며(미국 53%, 중국 27%), 2019년 7월 중순 발표된 372개의 유니콘 기업 중 유럽기업은 12개에 불과하였음(미국 182개, 중국 94개)

18) 스마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관이 IT 코드의 라인으로 직접 작성되는 자체 실행 계약임

- 해결방안으로는 ① 유럽 규제 본문의 개정, ② 블록체인 특징을 감안한 디지털 증권 맞춤형 규제 신설, ③ 유럽 수준의 시범 사례 도입 등이 있음

■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며, 특히 양도성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 및 관리가 필요함

- MiFID 2¹⁹⁾에서 정의한 양도성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유럽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적 공백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음
-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위해 법적 공백에 대한 유럽 차원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함
- 규제 프레임워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럽수준의 AML-CFT²⁰⁾ 관행과 조화되어야 하며, 블록체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야 함
- 또한 비례성을 고려하여 투자자들 간에 효율적인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보장되어야 함

■ 금융 혁신을 위한 유럽 규제 프레임워크와 감독 관행의 민첩성 향상이 요구됨

- 대다수의 유럽 규제에는 활동의 성격, 규모, 복잡성에 따라 비례원칙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이분법적(규제 또는 비규제)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허가를 선제적으로 요구함
 - 다른 사업에 비해 금융산업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위험이 클 수 있으나 혁신에 대한 유연한 접근방식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단계적 허가 프로세스를 고려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²¹⁾의 발송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산업의 데이터 저장 및 보호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제 공자 및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제3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수는 한정적이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제3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였음
- 관행에 따라 계약적, 실무적 또는 기술적으로 다른 클라우드 제공자로의 전환이 금지되

19) MiFI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EU가 연합 내 금융 시장을 규제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입법 체계임

20)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테러자금조달금지)

21) 기업이 특정 행위를 하기 전 법규에 위반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임

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연속성 및 감독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유발함

- 광범위한 데이터 사용은 절차 간소화 및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등의 장점이 있으나, 데이터 활용 시 KYC²²⁾/AML 등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칙을 준수하고 자금세탁 방지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함
- 개발 초기 단계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및 머신러닝(ML: Machine Learning)의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있으나,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6. 일본 금융상품 플랫폼사업 관련법 제정

■ 일본 정부는 금융상품 플랫폼 사업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중개업법』²³⁾을 2020년 6월에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동 법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과 배상책임의 기존 근거법인 『금융상품판매법』²⁴⁾을 『금융서비스법』²⁵⁾으로 법률명을 변경하고, ‘금융서비스 중개업’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동 법은 금융서비스 중개업자가 서로 다른 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 플랫폼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현재 금융청 중개업 제도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법규 제정을 검토하고 있음

■ 금융서비스 중개업자는 ‘하나의 등록으로 서로 다른 금융업종, 여러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중개업자’를 의미함²⁶⁾

- 종전에는 금융소비자가 대출과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금융업종별 개별 판매채널을 통해 가입하였으나, 법률 시행 후부터는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하나의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게 대출과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22) KYC: Know Your Customer 디지털 고객 확인; 금융투자상품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고객의 자산 규모나 과거 투자행태 등 기초적인 정보를 취득해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여야 함

23) 『金融サービスの利用者の利便の向上及び保護を図るための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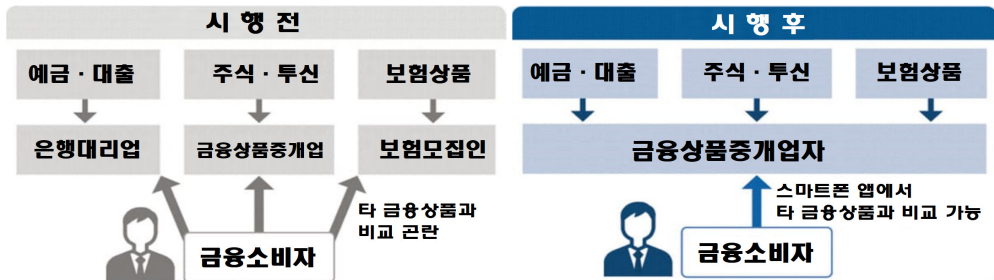
24)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

25) 『金融サービスの提供に関する法律』

26) 金融審議会, 「決済法制及び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に関するworking group 報告」(이하, ‘WG 보고서(2019. 12)라 함)

- 기존의 개별법은 금융상품 판매자가 펀드상품이나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금융권역별 각 금융회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판매자의 부정 행위에 관한 배상책임을 해당 금융회사에 귀속시키는 체계임

〈그림 1〉 일본 금융서비스 중개업법 시행 전후 금융상품 판매제도 비교



- 동 법은 금융서비스 중개업자가 해당 금융회사와 개별적인 판매위탁계약 없이 금융청에 금융서비스 중개업자로 등록할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중개자로서 판매할 수 있고 판매 부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배상책임이 중개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자력 확보를 위해 보증금 공탁 등을 의무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FinTec·벤처 기업 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공탁금 규모가 정해질 예정임

■ 다만, 금융서비스 중개업자가 은행, 증권, 보험상품 모두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보험’, ‘보험과 증권’ 등의 조합에 의한 선택적 등록 허가제로 금융서비스 중개업을 우선 실시할 예정임

- 또한, 동 법은 금융서비스 중개업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수수료를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 중에서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명시하지 않고 있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게 요구할 경우 판매 수수료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함

■ 금융서비스 중개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 범위는 금융청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복잡하고 리스크가 높은 상품은 우선 제외할 예정임

- 현재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금융서비스 중개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 허용 범위를 보통예금, 주택대출, 국채, 상장주식, 펀드, 상해·여행·골프보험 등으로 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표 1〉 금융청이 검토 중인 금융서비스 중개업자가 제공 가능한 금융상품(안)

구분	은행	증권	보험
판매 가능	보통예금, 주택대출	국채, 상장주식, 펀드	상해, 여행, 골프보험 등
판매 불가	정기예금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변액, 외화기준 보험

자료: 金融庁(2020. 3), 「金融サービスの利用者の利便の向上及び保護を図るための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説明資料」

- 금융서비스 중개업자 규제는 공통적 규제와 상품특성별 규제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기존의 금융권역별 개별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할 예정임

- 공통의 규제는 성실의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판매 수수료·보수 등 정보의 제공,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용자 정보의 적정한 취급, 이용자 재산의 수용 금지, 장부서류 작성 등임
- 특히,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고객정보 관리 등의 경우 온라인과 대면 판매, 신설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와 기존 판매업자 간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할 예정임

- 보험업법상 규제는 자기계약 금지, 고지의무 방해 금지, 부적절한 환승 모집 금지 등임

- 일본 금융당국은 금융서비스 중개업자 비즈니스에 기존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물론 FinTec 기업이나 비금융산업의 적극적인 진입을 기대하고 있음

- 독일의 ‘N26’²⁷⁾의 금융플랫폼 활성화 사례와 같이 일본의 ‘LINE’이나 ‘Rakuten’ 등의 FinTec기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및 소개할 경우 고객 편의성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금융심의회²⁸⁾는 예컨대 전자결제업자 등 FinTec업체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예금자가 예금 계좌의 잔액과 수입·지출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자금 수요와 자산 상태를 기초로 이용 가능한 대출의 소개 또는 라이프 플랜 니즈에 적합한 금융상품의 비교

27) 독일에서 2013년에 설립된 모바일전용은행으로 약 5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과 결제사업을 기반으로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

28) 금융청의 법적 자문기구

추천하는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법률안을 검토하였음²⁹⁾

- 또한, 기존의 부동산회사가 주택대출과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모델과 같이 비금융산업의 금융서비스 중개업 진입도 허용할 예정임

7. 중국 보험시장 대외개방 확대 및 외국 보험회사의 기회

■ 외국 보험회사들은 1992년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중국 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시장점유율이 미미함

- 1992년 중국인민은행은 외국 보험회사인 AIA Life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했으며, AIA Life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위해 “상해외자보험기관감독관리방법”³⁰⁾을 발표함
- 2001년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약속 이행으로 보험시장을 외국 보험회사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지만 지분소유제한, 영업지역제한 및 영업허가 제한 등 진입장벽을 만들었음
 - 2002년 발표된 “외자보험회사관리규정”³¹⁾은 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 소유 상한을 50%로 제한했으며 합작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영업지역 제한조치를 설정함
 - 2004년 발표된 “외자보험회사관리규정실시세칙”³²⁾은 중국에 진입하고 싶은 외국 보험회사에게 50억 달러 총자산, 30년 보험영업 경험 및 2년 중국 사무소 운영 경험과 같은 조건을 요구함
- 2018년 기준 중국 시장에 진입한 외국 보험회사 개수는 약 50개를 기록했지만 높은 진입장벽의 제약으로 외국 보험회사들의 총 시장점유율은 6.2%에 불과함
 - AXA는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산하 합작 생명보험회사 및 합작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3% 및 0.5%임

■ 2019년부터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 보험회사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음

29) WG 보고서(2019. 12)

30) “상해외자보험기관감독관리방법”(“上海外资保险机构暂行管理办法”)

31) “외자보험회사관리규정”(“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

32) “외자보험회사관리규정실시세칙”(“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实施细则”)

- 2019년 10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외자보험회사관리규정”을 수정해 30년 보험영업 경험 및 2년 중국 사무소 운영 경험을 포함한 영업허가제한조치를 폐지함
- 2019년 12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 소유 상한을 폐지함
- 2019년 12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외자보험회사관리규정실시세칙”을 수정해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지역 제한조치를 폐지함

■ 또한 중국 정부는 외국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개선 방안들을 발표함

- 2019년 7월 중국 정부는 일반 자산관리회사의 외국인 소유 지분 상한을 폐지했으며, 보험계 자산관리회사의 외국인 소유 상한을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2020년 3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자산관리상품관리잠정방법”을 발표해 보험계 자산관리회사에 적용된 차별적인 거래규제를 폐지함
 - 보험계 자산관리회사는 일반 자산관리회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함

■ 최근 중국 보험시장 대외개방이 확대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외국 보험회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합작 중국법인의 중국 주주 지분 인수 및 중국법인 설립을 추진함³³⁾

- 2019년 하반기부터 HSBC, AXA 및 CHUBB는 합작 중국법인의 중국 주주 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했거나 인수를 계획하고 있음
 - HSBC는 합작 생명보험회사, AXA 및 CHUBB는 합작 손해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2019년 8월 AIA Life는 중국 지사를 중국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2019년 11월 Allianz는 중국에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함
 - Allianz는 합작 생명보험회사, 독자 손해보험회사 및 합작 건강보험전문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AIA Life는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5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원수보험시장의 높은 잠재성장성으로 General Re, Swiss Re 및 Hannover Re는 중국 지사의 자본금을 증자했으며, AXA XL는 2020년 7월 재보험을 경영하는 중국법인을 설립함

33) 新京报(2020. 5), “保险开放加速:外资再保险数已超中资汇丰、安盛均入局”

- 2020년 4월 Allianz는 보험지주회사 설립에 이어 중국태강보험그룹 지분의 4%를 인수함
 - 태강보험그룹은 2019년 기준 1조 7,000억 위안(약 290조 원)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대형 보험그룹이며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건강보험전문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투자회사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ERGO는 중국에서 합작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생명보험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2020년 6월 태산손해보험회사 지분의 25%를 인수해 손해보험으로 사업을 확장함
 - 태산손해보험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작지만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향후 더 많은 외국 보험회사는 중국 보험회사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인수를 통해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거나 중국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부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되면서 고금리 상품 판매를 통해 외형성장을 추구하는 성장방식은 규제 강화로 불허됐으며, 고금리 상품을 판매한 많은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신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2월 안방보험이 재무건전성 문제로 중국 보험안정기금으로 넘어감
- 대부분 중국 중소형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1%도 안 되지만, 이들의 영업지역이 외국 보험회사보다 더 넓게 분포되어 있어 매력적인 인수 대상으로 평가됨
 - 2018년 기준 129개 중국 보험회사 가운데 102개 중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에도 못 미침
-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으며 이에 따른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분 투자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대부분 중국 중소형 보험회사들의 지배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중국 주주와의 협상 및 자산조사는 외국 보험회사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임
 - 대부분 중국 중소형 보험회사의 중국 주주는 지방정부, 지방금융회사, 지방은행임

8. 중국 자동차보험 제도개혁 및 전망

■ 2020년 7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는 “자동차보험 종합개혁지침”(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앞서 2015~2017년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동차상업보험 가격 결정권 확대를 통해 자동차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했음
 - 중국의 자동차보험은 크게 자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이하, ‘자동차강제보험’이라 함) 및 상업보험(이하, ‘자동차상업보험’이라 함)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15~2017년 추진된 자동차보험 제도개혁은 자동차상업보험에 한정됐으며 보험회사의 가격결정권 확대 외에도 자동차보험시범약관 도입, 혁신적인 자동차보험 약관 개발 장려 등이 있음³⁴⁾
- 그러나 자동차보험회사들의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지급 부담 거절로 보험계약자의 민원이 증가하면서 보험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악화됐음
 - 2017년 기준 손해보험에 관한 소비자 민원 건수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8.6%를 기록함³⁵⁾
- 이에 따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건전한 자동차보험시장 발전을 위해 규모 축소를 감수하더라도 소비자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함

■ 자동차보험개혁지침(의견수렴안)은 자동차상업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강제보험을 포함한 전체 자동차보험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함³⁶⁾

- 앞서 2020년 4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상업보험 제도개혁에 대한 선제적인 개선 방안으로 자동차상업보험 요율 산출에 필요한 계리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자동차강제보험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일된 약관 및 요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계리규정은 자동차상업보험에만 적용됨³⁷⁾

34) 光明日报(2015. 2), “商业车险条款费率改革再深化”

35)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8. 2), “中国保监会关于2017年度保险消费投诉情况的通报”

36) 新华网(2020. 8), “车险综合改革后幕 你的车险将有这些变化”

37) 자동차강제보험의 요율을 실질적으로 산출하는 기관은 중국보험협회임

- 또한 2020년 8월 중국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사업보험 제도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 자동차상업보험의 시범약관(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자동차강제보험에 관한 개혁내용은 보험가입금액 인상, 지역 손해율을 고려한 할인/할증 요인 신설 등이 있음

- 소득 및 물가 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자동차강제보험의 총 배상금은 기존의 12.2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 사망보험금은 기존의 11만 위안에서 18만 위안으로 인상되며 의료비는 기존의 1만 위안에서 1.8만 위안으로 조정됨
- 중국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 및 지역간 손해율 차이를 고려해 자동차강제보험 요율산출에 지역손해율을 고려한 할인/할증 요인을 사용함

■ 자동차상업보험에 관한 개혁내용은 주계약 정비, 보험가입금액 인상, 면책항목 축소, 특약 다양화, 사업비율 상한 하향 조정, 할인/할증 범위 확대 등이 있음

- 자동차상업보험의 주계약인 차량손실보험, 제3자배상책임보험, 탑승인원배상책임보험 및 차량도난보험을 차량손실보험, 제3자배상책임보험 및 탑승인원배상책임보험으로 조정함
- 소득 및 물가 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자동차상업보험의 최대 가입금액을 5만~500만 위안에서 10만~1,000만 위안으로 인상함
- 그 동안 보험계약자 주요 민원 원인이었던 지진 및 이에 따른 재해, 고온, 자연발화, 침수 및 원인불명으로 인한 차량손실을 면책사항에서 삭제함
- 자동차보험 계약자에 대한 더 많은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도난보험, 단독유리파손보험, 자기부담금 면제보험, 수리장비소 지정보험 및 뺑소니배상보험과 같은 특약 개발을 장려함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사업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상업보험의 사업비율 상한을 기존의 35%에서 25% 하향 조정함
- 자동차상업보험의 할인/할증 범위를 기존 보험료의 “0.85~1.15%”에서 “0.65~1.35%”로 조정하며, 추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더욱 확대할 방침임

■ 자동차보험 제도개혁으로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하락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상업보험의 사업비율 하향 조정 및 할인/할증 범위 확대로 자동차상업보험 무사고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50% 감면될 수 있음
-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동차강제보험의 지역 손해율을 고려한 할인/할증 요인 신설로 보험료가 추가로 줄어들 수 있음
- 다만 일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잦은 교통위반 기록, 불량한 운전습관으로 보험료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음

■ 자동차보험 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 제도개혁으로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악화되면 중국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음

- 2019년 기준 중국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0%를 기록함
- 2015~2017년 자동차상업보험 제도개혁으로 중국 자동차보험의 합산손해율이 98.6~99.9% 수준으로 치솟음
- 사업비율 하향 조정 및 할인/할증 범위 확대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과거처럼 공격적인 판매 경쟁에만 집중하면 이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대형 보험회사가 독식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³⁸⁾

- 중소형 보험회사에 비해 대형 보험회사는 자본력, 판매채널, 오프라인서비스망 등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음
 - 2015~2017년 시작된 자동차상업보험 제도개혁으로 일부 중소형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했으며 자동차보험 사업에서 철수하는 보험회사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중소형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시장에 대형 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차별적인 경영전략을 모색해야 함

38) 证券日报(2020. 7), “车险改革‘加量不加价’ 有谁欢喜有谁愁?”

Ⅱ.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1. 미국 신용기반 보험점수

■ 미국 보험회사는 1990년대 초 Fair Isaac Corporation(FICO)¹⁾에 의해 도입된 신용기반 보험점수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함

○ 자동차 보험사의 약 95%, 주택 소유 보험사의 85%가 신용기반 보험점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보험회사는 개인 신용 점수의 일부를 이용하여 신용기반 보험점수를 확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보험 가입 대상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함

○ 신용기반 보험점수는 개인 신용 이력의 특정 요소를 사용하여 보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함

○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신용 정보를 사용하여 자동차, 주택 등에 대해 보험상품 판매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함

■ 일반적으로 신용기반 보험점수를 결정하는 데 지불 내역(Payment History), 미지불 채무(Outstanding Debt), 신용 기록 기간(Credit History Length), 새로운 신용 추구(Pursuit of New Credit), 신용 혼합(Credit Mix)의 5가지 요소가 사용됨

○ 지불 내역(Payment History)은 특정 유형(신용카드, 소매계좌, 할부대출, 금융회사계좌, 모기지 등)의 계좌 결제 정보, 불리한 공공 기록(파산) 및 연체 내역, 연체의 심각도 및 기간 등을 포함함

○ 미지불 채무(Outstanding Debt)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 수준으로 모든 계정에 지불해야 할 총액, 사용된 신용 한도 비율, 지불해야 할 할부 대출 금액의 비율 등을 포함함

1) 1956년 설립되어 소비자 행동 분석을 통해 신용 점수 등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데이터 분석 회사임

- 신용 기록 기간(Credit History Length)은 각 계정의 보유 기간, 계정의 평균 보유 기간 등을 포함함
- 새로운 신용 추구(Pursuit of New Credit)는 최근 개설된 계정 수, 최근의 자발적 신용 조회 횟수 등을 포함함
- 신용 혼합(Credit Mix)은 보유하고 있는 신용의 유형(신용카드, 모기지, 자동차 대출)의 유무 등을 포함함
- 단,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결혼 여부, 나이, 소득 및 직업,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는 신용기반 보험점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음

■ 보험회사는 신용기반 보험점수의 활용이 일관성, 공정성, 높은 예측 가능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봄

- 보험점수는 차별적인 데이터를 제외한 신용관련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의 사용은 Fair Credit Reporting Act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정성을 갖추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점수를 활용하여 미래의 성과를 잘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보험계약자의 위험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지불하게 됨
- 보험회사는 보험점수를 활용하여 운영을 간소화하고 주요 인수 정보 및 기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주에서는 신용기반 보험점수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요율을 높이거나 보험가입을 거부, 취소 또는 갱신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일부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 소유자 보험과 같이 재산보험의 한 요소로 활용하는 것만을 허용하며, 다른 주에서는 모든 종류의 보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일부 주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신용 기록 정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 신용기반 보험점수를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결정에 사용할 수 없음

■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신용기반 보험점수 및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근거로 신용기반 보험점수의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이 보험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기반 보험점수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신용기반 보험점수에 대해 인지하고 있더라도 소비자가 신용기반 보험점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주(州) 보험 규제 당국은 신용기반 보험점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음

- 최근 NAIC는 소비자들에게 신용기반 보험점수와 관련하여 다음 3가지를 인식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함²⁾
 - 모든 주에서 신용기반 보험점수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신용기반 보험점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불 내역, 미지불 채무, 신용 기록 기간, 새로운 신용 추구, 신용 혼합)
 - 신용기반 보험점수 향상 방안(세금, 벌금 및 수수료의 기한 내 납부 등)

2. 이케아 HEMSÄKER와 생태계 경제에서의 보험

■ 이케아(IKEA)는 스위스리(Swiss Re)의 iptiQ와 협력하여 ‘HEMSÄKER’를 발표하며 보험을 생태계 경제³⁾의 일부로 전환시키며 보험시장에 진입함⁴⁾

- HEMSÄKER⁵⁾는 주택 및 개인상해보험(Home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상품으로 현재 싱가포르 및 스위스에서⁶⁾ 연간 59달러의 저렴한 비용에 판매되고 있음⁷⁾
 - 해당 보험은 가족 및 거주자 모두에게 화재, 강도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및 가구의 손상과 개·보수 등을 폭넓게 보장함
 - 1년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10달러 상당의 이케아 패밀리 포인트 1,000점

2) NAIC(2020. 6. 29), “Credit-Based Insurance Scores Aren’t the Same as a Credit Score. Understand How Credit and Other Factors Determine Your Premiums”

3) 생태계 경제(Ecosystem Economy)란 기업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공급업체, 유통업체, 고객, 정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생물 생태계와 같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경제 관계를 의미함

4) Keith Stonell(2020. 4. 21), “Blog: Do insurers risk being relegated to the role of white label cover providers in an era of Amazon and Apple?”, Insurance Post

5) 스위스어로 집(Home)과 보안(Secure)의 합성어임

6) Jonathan Swift(2020. 2. 21), “Blog: Meatballs, Billy Book cases and Hemsaker: Can Ikea make flat pack household insurance a success?”, Insurance Post

7) <https://www.ikea.com/sg/en/customer-service/services/hemsaker-insurance-pub293fe740>

을 제공하고 이케아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함

○ iptiQ는 재보험사인 Swiss Re의 자회사로 디지털 B2B2C⁸⁾를 사업 모델로 하며 디지털 플랫폼 및 화이트 레이블 보험 상품을 제공함

- 화이트 레이블(White Label)이란 'Private Label'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상품 및 서비스에 브랜드 및 로고가 제거된 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이케아는 향후 이케아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구 및 식재료 외에도 관련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것으로 예상됨

- 이케아는 HEMSÄKER도 주도적으로 만들어 이에 대한 소유권 및 판매 책임을 갖고 있음

■ 생태계 경제로의 전환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유통 및 판매채널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각 회사별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어 기존 보험회사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비즈니스 생태계의 대표적인 플랫폼 제공자인 아마존(Amazon)과 애플(Apple) 등이 보험상품과 자체서비스를 융합하여 제공할 경우, 빅데이터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주도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⁹⁾

- 반면 기존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 및 판매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음

○ 플랫폼으로의 소비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나 기존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지속적인 접점이 없음

- 현재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접점이 생기는 경우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 불만 접수, 보험계약의 갱신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뿐임

■ 보험회사들은 현재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모바일 및 사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등 고객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¹⁰⁾

8) Business to business to consumer, B2B와 B2C의 합성어임

9) Keith Stonell(2020. 4. 21)

10) Keith Stonell(2020. 4. 21)

3.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괴롭힘·갑질 보험상품 개발 확대

■ 최근 일본에서는 근무 중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됨

- 일본 후생노동성(2019)에 의하면 직장내 괴롭힘 또는 상사 등의 갑질로 인한 근로자의 민원 제기 건수가 연간 약 9만 건을 상회하여 근로자 45명 중에 평균 1명이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 이에 일본은 직장 내 또는 직무와 관련된 관계사의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필요 이상의 언동 및 폭행 등에 의해 종업원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경우 고용주의 피해 대책을 포함한 『파워하라(パワハラ) 방지법』¹¹⁾을 2019년에 제정함

■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에 대한 종업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다양한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기업성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 2015년에 Sexual Harassment(성희롱) 피해를 보장하는 기업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한 이후 2016년 Power Harassment(직장 상사 갑질), 2017년 이후 Maternity Harassment¹²⁾, Moral Harassment(직장내 왕따), Care Harassment¹³⁾, Smell Harassment¹⁴⁾ 등으로 보장대상을 확대함
-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에서 기침만 해도 감염이 의심돼 사과를 요구하거나 따돌림을 하는 코로나 Harassment도 증가하고 있음

■ 괴롭힘·갑질보험은 직장에서 괴롭힘 또는 갑질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종업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경우 배상금이나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상품임

- 예를 들어, 종업원 1천 명 규모의 기업이 연간 보험료 약 90만 엔(약 1,009만 원)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시 피해 종업원 1인당 최고 3천만 엔(약 33,6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 보장내용은 피해를 입은 종업원이 기업에 청구한 손해배상을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언론 홍보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특약상품으로 보장함

11) 공식 법률명은 『改正労働施策総合推進法』임

12) 직장인 여성이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받는 행위를 뜻함

13) 직장에서 부모 간병 또는 자녀 육아를 양립하는 종업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뜻함

14) 냄새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뜻함

○ 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정 시 법률에서 규정한 기업의 괴롭힘·갑질 방지 사내대책 체계 유무와 과거 괴롭힘·갑질 사고 발생 건수 추이를 반영함

■ 현재 동 보험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도쿄해상, 손보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아이오이손해보험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고 범위나 보장내용을 확대하는 등 상품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아이오이손해보험은 2019년 10월부터 직장내 괴롭힘·갑질 피해 사고를 보장하는 기존 상품을 개정하여 거래관계 또는 자회사 등 타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종업원의 피해사고를 보장내용에 포함함

〈표 1〉 최근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괴롭힘·갑질보험 상품 차별화 현황

회사명	판매시기	주요 보장 확장 내용
미츠이스미토모해상	2019. 10	거래관계사 또는 자회사 종업원의 배상청구 시 추가로 보장
아이오이손해보험	2019. 10	
도쿄해상	2020. 1	고객 성희롱, 거래회사에서 클레임 등으로 종업원의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책임 비용, 변호사 비용 등 보장
손보재팬	2020. 2	Moral·Power·Maternity·Care Harassment를 추가로 보장

자료: 産経新聞(2020. 3. 8)을 기초로 작성함

○ 도쿄해상은 2020년 1월부터 판매한 상품은 종업원이 블랙컨슈머 등의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클레임이나 거래처로부터 폭언이나 스토킹 등의 괴롭힘 행위를 받을 경우 변호사나 법률상담 비용을 보장에 포함함

○ 손보재팬은 2020년 2월부터 Maternity Harassment, Moral Harassment 사고를 추가하고 종업원의 손해배상, 사고발생 후 기자 회견, 사과 문서 작성 등 언론홍보 비용과 변호사 상담비용 등을 보장하는 등 특약상품을 확대함

■ 괴롭힘·갑질보험 시장은 괴롭힘·갑질에 대한 분쟁 증가에 따라 최근 4년간 3.8배 성장하였으며, 법률 시행에 따라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손해보험 4개사의 괴롭힘·갑질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5년 1.7만 건에서 2019년 6.6만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임

- 도쿄해상은 2020년 1~3월간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손보재팬은 2019년간 전년동기 대비 2배 증가함¹⁵⁾

4. 싱가포르, 고액자산가를 위한 생명보험회사 지점 설립

■ 2020년 8월 캐나다계 다국적 보험회사이자 자산관리사인 Sun Life Financial사는 싱가포르에 고액자산가(High Net Worth)를 위한 생명보험회사 지점(Sun Life Singapore)을 설립하였음

- 모기업인 Sun Life는 1990년대부터 고액자산가를 위한 생명보험 상품을 개발해 옴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은 2020년 5월 Sun Life Singapore 설립을 최종 허가하였고 지점은 8월 7일 오픈하였음

■ Sun Life Singapore는 아시아 지역에서 입지를 확장하고 특히 고액자산가를 위한 생명보험 사업에 집중함

- 동 사는 자산 상속과 관련한 문제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으며 고액 및 초고액자산가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를 자녀세대에게 상속하는 방법과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임
 - 금융 상품을 통한 절세와 세대 간 부 이전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것임
 - 싱가포르를 비롯해 홍콩, 버뮤다 지역에서 고액 및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생명보험상품을 판매 중임
- 싱가포르 고액자산가의 75%가 상대적으로 금융 안전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재산 상속 및 유산 계획에 활용하고 있음¹⁶⁾
 - 싱가포르 고액자산가의 86%가 1등급 의료 시설 이용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요로 건강보험 및 CI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음

■ 싱가포르의 고액자산가들은 생명보험상품을 기본적인 생명 보장 용도를 넘어 총체적인 자산 관리 계획으로 활용함

- 싱가포르 부유층은 개인 의료비 지원, 부동산 계획, 절세, 사업 승계, 자산관리 수단으로 보험을 활용함
 -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충격으로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현재 상황에서 자산의 장기적 보호를 위해 경영자보험¹⁷⁾과 같은 보험 솔루션의 중요성을 인식함
- 고액자산가들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특화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15) 日本經濟新聞(2020. 5. 20)

16) <https://www.aia.com.sg/en/about-aia/media-centre/press-releases/2020/aia-report-release-singapore-adaptation.html>

17) 경영자보험(Keyman Insurance)은 회사의 주요 인물에 대해서 수취인을 회사로 하는 생명보험임

5. 호주 정신질환 관련 주별 정보 공개

■ 2020년 7월 말 호주 금융서비스위원회(FSC)는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고자 이 같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보상보험 민원 건수와 보험금 지급 기간을 주별로 분석한 자료를 발표함¹⁸⁾

- 동 기관에 따르면 영구장애보험(TPD: Total Permanent Disability)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정신질환은 소득보상보험금 지급 요인 중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생명보험회사는 2019년 9,500여 명의 보험금 청구자에게 정신질환 관련 보험금(영구장애보험 및 소득보상보험)으로 약 12억 4,000만 호주달러(약 1조 840억 원)를 지급하였음

- 이는 전년대비 약 268% 증가한 수치인데 2018년의 경우 약 3억 3,700만 호주달러(약 2,940억 원)를 지급하였음¹⁹⁾

■ 가장 많이 발생한 정신질환은 단발적 혹은 재발적으로 발생하는 우울증이었고 그 뒤로 불안장애, 고강도 스트레스성 반응 순임

- 정신질환 중 우울증, 불안장애, 고강도 스트레스성 반응이 차지한 비중은 2019년 각각 16.5%, 13.4%, 11.3%였음
- 상위 5개 정신질환 비중은 2018년 69%에서 2019년 46.9%로 내려가 전년 대비 정신질환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해졌음을 반증함
- 한편 2019년은 고강도 스트레스성 반응(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공황 또는 불안성 발작과 같은 불안 장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8) file:///C:/Users/jymDownloads/20200730_FSC%20Media%20Release_data%20reveals%20the%20mental%20health%20burden%20shared%20across%20the%20nation%20(1)%20(6).pdf

19) <https://www.investordaily.com.au/superannuation/45814-mental-health-dominates-insurance-payouts-fsc>

〈표 2〉 상위 5개 정신질환 종류 및 발생 비중

2018년			2019년		
순위	비중(%)	정신질환 종류	순위	비중(%)	정신질환 종류
1	22.9	고강도 스트레스성 반응.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1	16.5	우울증(단발성 혹은 재발성)
2	16.8	단발성 우울증. 예) 에너지 감소, 활동성 저하	2	13.4	불안 장애. 예) 공황 또는 불안성 발작 (Anxiety Attacks)
3	13.2	재발성 우울장애	3	11.3	고강도 스트레스성 반응.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4	10.3	불안 장애. 예) 공황 또는 불안성 발작 (Anxiety Attacks)	4	3.6	알츠하이머병
5	6.8	양극성 정서 장애	5	2.1	조현병(정신분열증)

자료: 호주 금융서비스 위원회(FSC)

■ 정신질환으로 인한 소득보상보험 민원 건수와 보험금 지급 기간은 주별로 다르게 나타남

- 호주 6개 주 및 2개 자치지역 가운데 소득보상보험 명목으로 지급되는 정신질환 민원 건수가 가장 높은 주는 퀸즐랜드 주로 보험 계약 10만 건당 180개임
 - 그 다음으로 태즈메이니아(158개), 서호주(145개), 남호주(140개) 순임
- 한편 보험금 지급 기간과 관련해서는 남호주가 5.6년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주는 북부 지구(3.2년)임
- 동 보고서는 정신질환이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정신질환의 형태와 민원 건수 및 보험금 지급 기간만을 나타내고 있음

〈표 3〉 소득보상 명목의 정신질환 보험금 민원 건수 및 지급 기간

(단위: 건, 년)

주/자치지구	민원 건수 (보험 계약 100,000 건당)	지급 기간 (평균 연수)
북부 지구	75	3.2
뉴사우스웨일스	115	4.7
호주 수도 지구	120	3.9
빅토리아	126	4.7
남호주	140	5.6
서호주	145	4.5
태즈메이니아	158	5.1
퀸즐랜드	180	4.6

주: 자료는 2014~2018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소득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KPMG와 FSC가 공동으로 작성함

자료: 호주 금융서비스 위원회(FSC)

■ 호주 생명보험회사의 정신질환에 따른 보험금 부담은 점차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발간한 호주 금융서비스위원회 자료²⁰⁾에 따르면 영구장애보험금 지급 청구의 24.1%가 정신질환에 기인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정신질환 보험금 청구는 다른 보험금 민원보다 접수 및 평가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보험금 지급률은 91%로 매우 높은 수준임
 - 2018년 영구장애보험의 88%가 1차 보험금 청구 시에 지급된 데 반해 정신질환의 경우 1차 보험금 청구 시 지급률이 91%에 달함
- 높은 지급률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보험금은 지급 자체가 피보험자의 정신 건강 호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 따라서 호주 생명보험회사는 정신질환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험금 절약에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호주 금융서비스위원회는 2019년에도 정신질환과 관련한 데이터를 공개한 바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원인 파악의 중요성을 역설함

- KPMG에 따르면 호주인의 절반 정도가 생애 한 번 이상 정신건강과 관련한 질병을 앓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²¹⁾

20) <https://www.investordaily.com.au/superannuation/45814-mental-health-dominates-insurance-payouts-fsc>

21) file:///C:/Users/jym/Downloads/20191004%20FSC%20Media%20Release%20mental%20health%20data%20life%20insurance%20(1).pdf 및 <https://home.kpmg/au/en/home/about/citizenship/mental-health.html>

6. 코로나 단신

가. 영국 화재보험금 청구 증가와 보험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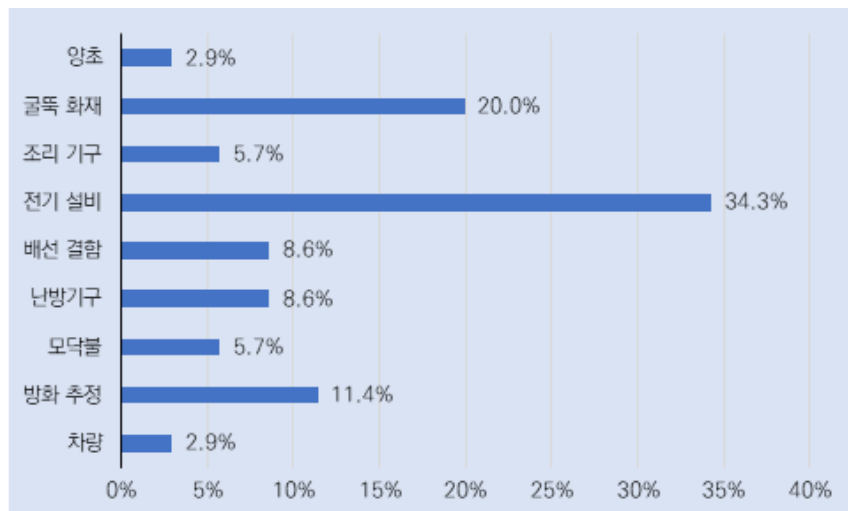
■ Crawford²²⁾에 따르면 영국 전역의 락다운(Lock Down) 조치로 인한 경제난으로 방화가 증가하고 있음

○ 락다운 기간 동안 화재보험금 청구가 40% 급증하였으며, 건물 화재 원인의 36.1%가 방화인 것으로 나타남

■ 화재보험금 청구 증가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락다운에 따른 전자 기기 사용량 확대로 전기 설비 관련 화재가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과거 영국 내 학교 화재 중 상당수가 학교가 비어 있을 때 발생하였으므로 이번 락다운 조치가 학교 관련 화재 청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함

〈그림 1〉 락다운 기간 화재보험금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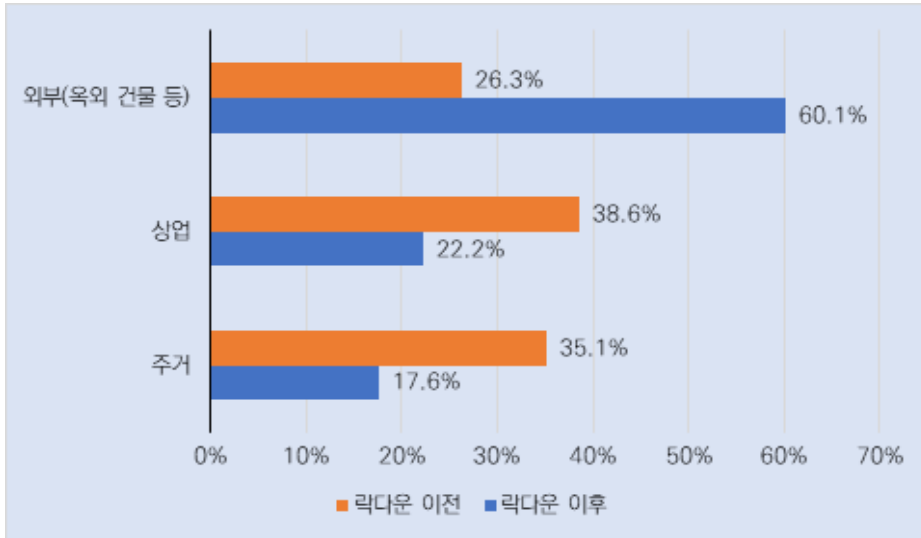
자료: Crawford

■ 락다운 전후의 화재청구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부(옥외 건물 등)의 화재청구 비율이 락다운 이전 26.3%에서 락다운 이후 재택근무, 가정 활동 증가로 33.8%p 증가한 60.1%로 나타남

22) Crawford(2020. 7. 17), "Crawford&Company Data Driven - Fire"

- 락다운의 영향으로 외출보다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모닥불, BBQ 및 흡연이 외부 화재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락다운 전후 화재청구유형 변화



자료: Crawford

- 한편, 경기침체와 보험사기의 높은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는 코로나19에 기인한 가계 및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보험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
- 영국 보험 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지난 2009년 경기침체 기간 동안 사기 청구가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을 발견함

나. 일본 자전거 출퇴근 증가에 따른 자전거 보험 가입 증가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 출퇴근이 급증함에 따라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일본지자체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접촉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측에 거액의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추세임

- 자전거 보험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보상’과 운전자 자신의 부상 등에 대비한 ‘상해 보상’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지자체가 의무화하는 것은 ‘배상 책임 보상’으로 보험료는 월 500엔(한화 약 5,500원)을 넘지 않는 상품이 대다수임
- 2015년 효고 현, 2019년 가나가와 현, 시즈오카 현, 나가노 현, 2020년에는 도쿄에서 의무화되었음

■ 코로나19와 지자체 가입 의무화의 영향에 따라 라인(LINE)에서 가입하는 ‘자전거 라이프 안심 보험’의 도쿄 내 4월 계약 건수는 지난 1월 대비 22~23배 늘어남

- 전국 가입 건수 또한 1월 대비 10배 증가함

■ 코로나19에 따른 자전거 출퇴근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전부터 자전거 출퇴근 제도를 가진 쿡패드(クックパッド)사는 도쿄 시부야 본사에서 반경 15km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전거 출퇴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1만 엔(한화 약 1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자전거 유지 보수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직원 본인은 5,000만 엔(한화 약 5억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디스코(ディスコ)사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을 2020년 3월부터 금지하며 자전거 출퇴근을 전사적으로 권장하고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자전거 출퇴근을 지원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2020년 4월 자전거 통근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인증하는 제도를 발표함
- 2020년 6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감염 예방을 위한 자전거 출퇴근 확대에 대해 전용차선 등 환경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특집]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이슬람 보험 (타카풀) 비교

1. 타카풀 개요

■ 타카풀(Takaful)은 아랍어로 '상호 보증'을 뜻하는 이슬람식 보험제도임

- 이슬람식 보험인 타카풀은 전통적 보험상품이 이슬람율법(샤리아¹⁾)에 반하는 투기, 불확실성, 이자 등과 관련된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금기시함
 - 전통적 보험은 계약자 입장에서 지급 청구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보험회사는 이자를 수반하는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 반해, 타카풀에서는 이슬람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투자 대상을 선택함
- 타카풀 제도는 이슬람율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발적 참여자들의 상호 부조와 기부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는 제도임
 - 계약자는 전통적 보험에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타카풀 운영사에게 예탁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예탁금 중 일부를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기부금으로 지불함
- 타카풀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가족 타카풀(Family Takaful)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일반 타카풀(General Takaful)로 크게 구분됨

■ 글로벌 타카풀 자산은 2017년 기준 약 460억 달러로 전 세계 47개국에서 324개의 타카풀 회사가 운영되고 있음

1) 샤리아(Syariah)란 이슬람 법 체계로 종교생활부터 가족·사회·경제·정치·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무슬림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체계임. 샤리아 율법 내용으로는 ① 돈은 교환과 측정을 위한 매개체일뿐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② 이슬람 금융 상품은 '빌딩임대수익', '자동차대여료', '고속도로 통행료수입' 등 실물 유형자산에 기반한 수익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③ 도박, 술, 마약, 무기 등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금융 거래의 윤리성에 대해 명시함. 보험에 있어 리스크 전가에 따른 지급금에 대한 불확실성은 샤리아에 위배되며 따라서 샤리아 보험(일명 Takaful)의 경우 일반적인 보험 상품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 여겨짐. 샤리아 보험은 보험가입자 간의 공제조합펀드(Tabarru)를 관리하는 데 있어 '기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제조합펀드 운영 보험회사는 운영 수수료 내지는 이익 공유금을 지급받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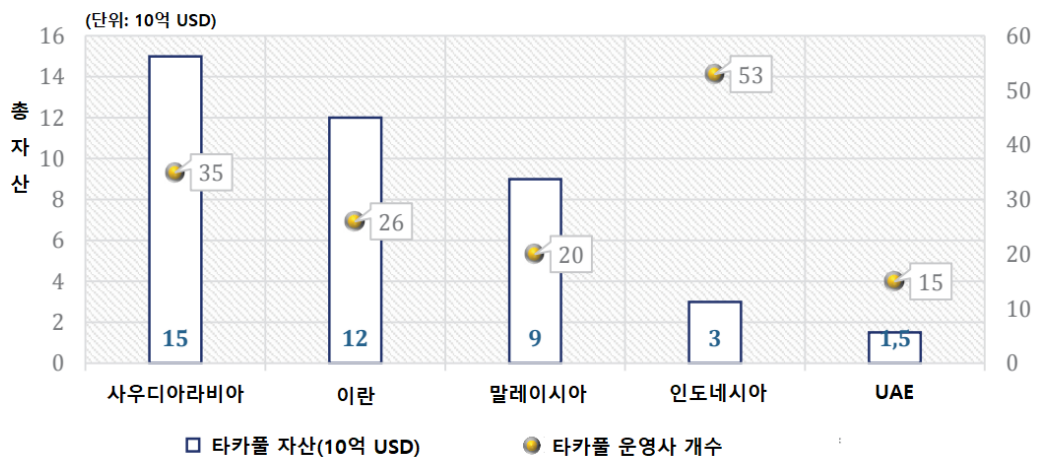
- 걸프협력회의의 6개국으로 구성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지역이 가장 큰 비중(77%)을 차지하며, 뒤이어 동남아시아(15%), 아프리카(5%) 순임
- 타카풀 주요 3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말레이시아로 이들이 타카풀 전체 자산액의 79%를 차지함

〈표 1〉 글로벌 타카풀 현황(2017년)

글로벌 타카풀 자산 규모	타카풀 운영사	주요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말레이시아) 전 세계 타카풀 자산 비중
460억 달러	324개	79%

자료: COMCEC(Standing Committee for Economic and Commercial Co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2019. 10), "Improving the Takaful Sector In Islamic Countries"

〈그림 1〉 타카풀 주요국 자산 및 운영사 현황(2017년)



자료: Thomson Reuters(2018), "Islamic Finance Development Report 2018: Building Momentum"

- 수입보험료 기준 동남아시아 타카풀 시장은 약 38.6억 달러로 글로벌 타카풀 시장의 약 15%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국으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있음²⁾
- 2017년 말레이시아가 동남아 타카풀 시장의 약 70%(약 27.7억 달러), 인도네시아가 25%(약 9.7억 달러), 브루나이가 5%(1.1억 달러)를 차지함³⁾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타카풀 시장의 선두국가로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이슬람 금융

2) 이슬람금융위원회(IFSB)(2019), "Islamic Financial Services Industry Stability Report" p. 32

3) 이슬람금융위원회(IFSB)(2019), "Islamic Financial Services Industry Stability Report" p. 32

과 타카풀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고 무슬림 비중이 높으며 (인구의 80% 이상) 타카풀 제도를 선진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타카풀 시장 비교

〈일반현황〉

■ 자산액 기준으로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 대비 약 3배 정도 높음

- 2017년 기준 말레이시아 타카풀 자산은 약 90억 달러, 인도네시아는 약 30억 달러 규모임
 -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대비 총 인구 수가 월등히 많고(8.5배) 무슬림 인구 비중도 높으나, 타카풀 자산 규모는 제도가 선진화된 말레이시아가 약 3배 정도 더 큼
- 전체 보험산업에서 타카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약 20%인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5% 수준임
- 한편 타카풀 운영사 개수(타카풀 창구 포함)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약 50여 개로 20여 개 회사를 보유하는 말레이시아 대비 더 많은 수준임

〈표 2〉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타카풀 일반현황 비교

구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총 인구	약 3,200만 명	약 2억 7,300만 명
무슬림 인구 비중	60% 이상	80% 이상
타카풀 자산 규모	약 90억 달러	약 30억 달러
전체 보험 중 타카풀 비중	약 20%	약 5%
타카풀 운영사 개수	약 20여 개	약 50여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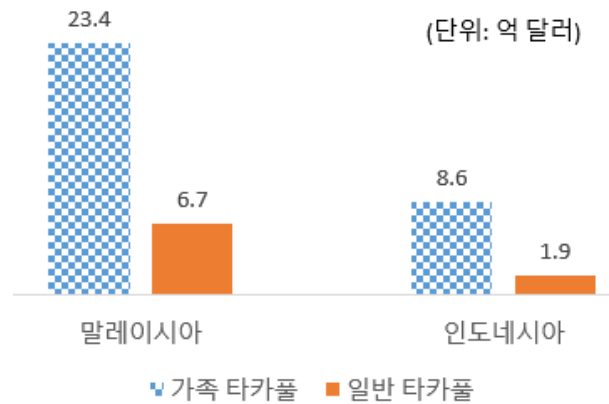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18), "Annual Report"; COMCEC(2019. 10), "Improving the Takaful Sector In Islamic Countries"; 인도네시아 금융규제당국 OJK(2018), "Statistik Perasuransian Indonesia 2018" 자료를 종합함

〈수입보험료〉

■ 말레이시아의 타카풀 수입보험료가 인도네시아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편

- 2018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가족 타카풀 수입보험료는 각각 23.4억 달러와 8.6억 달러로 말레이시아가 2.7배 높음
- 2018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일반 타카풀(재보험 포함) 수입보험료는 각각 6.7억 달러와 1.9억 달러로 말레이시아가 3.5배 높음

〈그림 2〉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타카풀 수입보험료 비교(2018년)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18), "Annual Report"; 인도네시아 금융규제당국 OJK(2018), "Statistik Perasuransian Indonesia 2018" 자료를 종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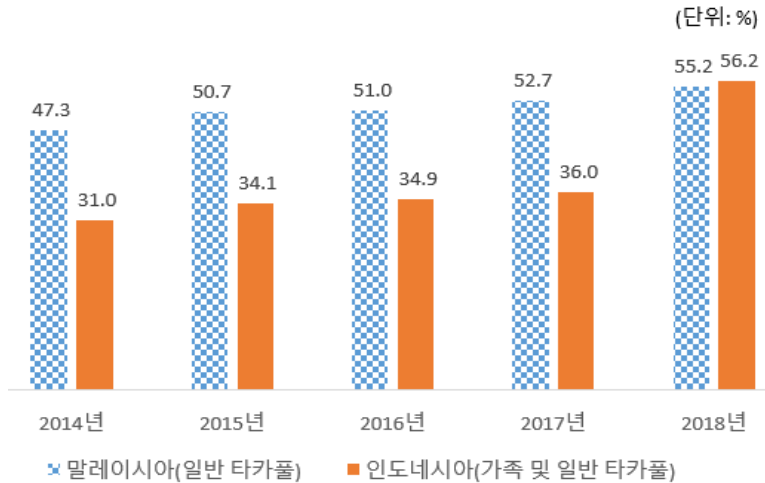
〈손해율〉

■ 2018년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 일반 타카풀 손해율이 인도네시아 가족 및 일반 타카풀 손해율보다 높음

- 2014~2017년간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 손해율이 인도네시아 가족 및 일반 타카풀 대비 약 15%p를 상회하는 모습임
- 2018년 인도네시아 가족 타카풀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약 두 배로 증가함
- 2019년 인도네시아 가족 타카풀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약 65%⁴⁾)

4)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2019), "Indonesia Sharia NBFI Statistics", Table 3.1 확인

〈그림 3〉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타카ful 손해율 비교(2014~2018년)



주: 말레이시아의 경우 가족 타카ful에 대한 손해율은 없으며 일반 타카ful 자료만 확인됨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월간 통계 자료 중 “General Takaful: Claims Ratio of Direct Takaful Operators”;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Statistik Perasuransian Indonesia 2018”, p. 30 종합함

〈표 3〉 인도네시아 타카ful 지급보험금 및 보험료(2014~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지급보험금			보험료			손해율
	가족타카ful	일반타카ful	합계	가족타카ful	일반타카ful	합계	
2014년	153	63	215	581	112	693	31.0
2015년	179	63	242	573	136	709	34.1
2016년	212	86	297	654	199	853	34.9
2017년	243	100	342	768	184	952	36.0
2018년	498	102	600	877	191	1,067	56.2

자료: 인도네시아 금융규제당국 OJK(2018), “Statistik Perasuransian Indonesia 2018”

〈기타〉

■ 말레이시아 일반 타카ful의 경우 특히 자동차 상품의 판매비율이 높고, 현재 주요 대형 마트 체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이 개발됨

○ 2018년 말레이시아 일반 타카ful은 자동차 타카ful의 총 수입료 비중이 가장 높고(약 62.3%), 그 뒤로 화재(20.1%), 기타(17.6%) 순임

- 자동차 타카ful의 성장은 높은 자동차 판매량에 기인함

〈표 4〉 말레이시아 일반 타카풀 상품별 포트폴리오(2017~2018년)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자동차	59.2	62.3
화재	21.5	20.1
기타	19.3	17.6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18), "Annual Report"

- Zurich Takaful Malaysia사의 경우 말레이시아 할랄 하이퍼마켓체인 MYDIN⁵⁾과 10년 계약을 체결하며 전국 60개가 넘는 매장에서 타카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타카풀 산업은 하위 소득 40%를 대상으로 하는 타카풀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음
 - 2017년 출시된 Perlindungan Tenang 상품은 1년 보험료가 최소 39링깃(약 1만 원) 수준임

〈정책〉

-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슬람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오랜 기간 타카풀 산업을 육성하여 왔으며 인도네시아는 타카풀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 중임
 -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 타카풀 회사, 금융시장이 합해진 종합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으로 정부 지원도 활발함
 - 말레이시아는 2018년까지 종합보험회사에서 일반 타카풀을 분리하여 별개의 회사로 독립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타카풀 산업을 활성화하였음
 - 또한 타카풀 최초로 위험기준자기자본(RBC)과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⁶⁾를 시행한 바 있으며 높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와카라⁷⁾ 요율을 공시함
 -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금융 서비스 부문을 말레이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선진화 시키고자 각종 정책을 시행 중임
 - 인도네시아 무슬림 인구의 낮은 보험침투율,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연금 상품 수요 증가 등으로 시장 잠재력이 있음

5) MYDIN은 말레이시아에 73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 할랄 마트임

6)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7) 와카라란 대리인 수수료로 타카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상한, 하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인도네시아 또한 말레이시아와 같이 2024년까지 타카풀 상품을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사업부를 분리 운영토록 타카풀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침

3. 인도네시아 타카풀(샤리아 보험) 정책 변화

■ 인도네시아에서 타카풀과 관련한 샤리아 보험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음

- 2014년 금융규제당국에서 제정한 ‘보험법 40’은 샤리아 사업부를 독립·분사시키는 내용을 최초로 언급하였음
 - 이슬람율법인 샤리아 원칙을 따르는 보험 상품의 경우 기존에는 샤리아 사업부 또는 보험회사의 일반 사업부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 그러나 2014년 제정된 보험법으로 샤리아 사업부는 기존 사업부에서 독립되어야 함
- 2016년 금융규제당국은 샤리아 사업부 분할과 관련한 추가 규정(POJK 67⁸⁾)을 명시하였음
 - 동 규정에서는 기존 샤리아 사업부에서 운영하던 제품 포트폴리오를 새로 허가 받는 독립 샤리아 보험회사 혹은 기존의 독립형 샤리아 보험회사에 이전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 2018년 금융규제당국은 비상장 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 투자 한도를 최대 80%까지로 규정하였음(PP.No 14/2018)
 - 신규 설립된 보험회사도 80% 외국인 소유 한도 규정을 적용받으며 20% 이상의 발행 자본 및 납입 자본을 인도네시아 국민이 소유하도록 규제하였음
 - 단, 보험회사의 외국인 소유 지분이 2018년 8월 동 법이 발효되기 전 이미 80%를 초과하였을 경우 이 같은 규제에서 면제됨(‘Grandfathering’ 면책 사항)
 - 그러나 분할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80% 외국인 지분 한도 규제 적용 대상 여부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등 시장 혼선이 있었음⁹⁾

8) No.67/POJK.05/2016 Licensing and Institution of Insurance companies and Reinsurance Companies

9) 예를 들어, 신규 설립 독립형 샤리아 보험회사의 경우 80% 외국인 지분 한도 규제의 적용대상인지 혹은 면제 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함

■ 이에 2020년 1월 인도네시아 금융규제당국은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샤리아 사업부 분사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고자 기존 규정을 업데이트한 초안(PP No.3/2020)을 작성함

- 동 안을 통해 외국인 소유 지분, 서비스 공유 및 인력 활용 방안, 자본 규정, 분할 과정에 관한 상세 법안을 명시함
- 바뀐 안에 따르면 독립형으로 분사된 샤리아 사업부는 기존 상품을 신규 등록·출시할 필요가 없고, 감독청 승인까지의 시간이 단축되며, 분사 사실을 (보험계약자에 개별 통지하는 방식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만으로도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임
- 금융규제당국은 2024년 10월 이후에도 분사하지 않은 샤리아 사업부에 대해서 기업 허가(라이선스)를 철회할 예정임

■ 새로 발표된 금융규제당국 초안으로 보험회사의 샤리아 사업부 분할과 관련한 수익성 분석이 가능해짐

- 보험회사는 샤리아 사업부 독립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소규모로 샤리아 사업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규모의 한계로 재정적 측면에서 독립형 샤리아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한편 대형 샤리아 사업부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분사를 통해 소규모 사업 포트폴리오를 인수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음

[특집] 해외 판매채널: 일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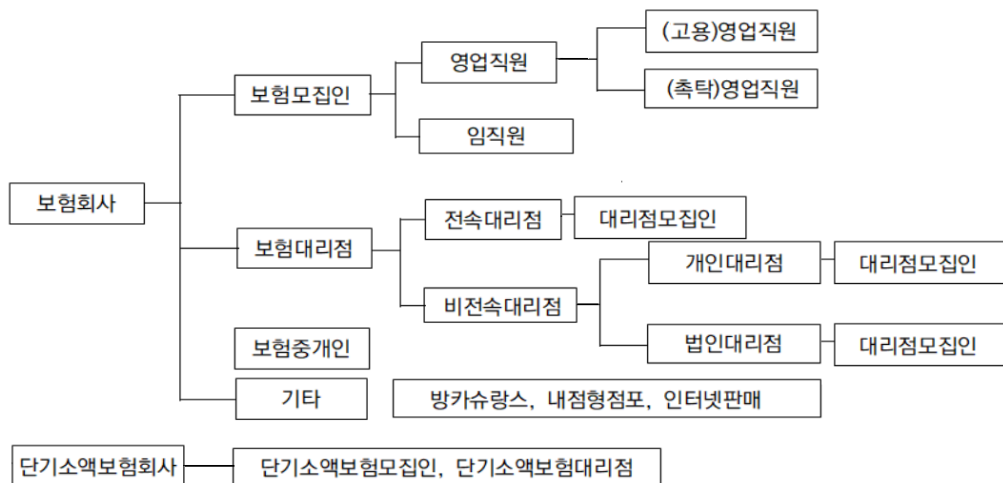
1. 판매채널 종류

■ 일본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체계는 크게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기타로 구성되며, 단기소액보험회사의 경우 단기소액보험모집인이 별도로 존재함

■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에는 임직원과 영업직원이 있음(〈그림 1〉 참고)

- 임직원은 보험회사에 고용된 임원과 내근직원으로 구분되고, 고객이 보험회사 지역별 점포 등에 내점할 경우 직접 대면방식으로 영업함
- 영업직원은 생명보험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직원과 입사 후 3~6개월 연수기간 동안에 임시적인 촉탁영업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면방식과 비대면방식으로 영업함
- 이외에도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모집인, 단기소액보험모집인 등이 있음

〈그림 1〉 일본의 보험회사 모집조직 체계



■ 보험대리점은 크게 업종에 따라 생명보험대리점과 손해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생·손보 대리점은 표와 같이 다시 전속대리점과 비전속(승합)대리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속대리점은 하나의 보험회사와 보험상품 전속 위탁판매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으로 주로 개인대리점이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함

○ 비전속대리점은 일본 실무에서는 승합(乗合)대리점이라고도 하는데, 복수의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 관계에서 영업하는 방식으로 법인대리점의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음

■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에는 전업과 부업(겸업) 형태의 대리점이 각각 존재함

○ 전속대리점은 개인보험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하며, 특정상품을 특화하여 판매하는 전업형 대리점과 보험상품 판매 이외에 다른 사업과 겸업 또는 부업하는 부업(겸업)형 대리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겸업(부업)의 대표적 사례는 자동차수리점이 특정 손해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임

〈표 1〉 일본 보험대리점의 종류

대분류	중분류	종류	주요 시장	모집인 규모 및 특징
전속	보험 전업	전업대리점	개인	일반적으로 특정상품을 특화하여 판매
	부업형	부업(겸업)대리점	개인	1명 이상, 전직 영업사원 등
비전속 (승합)	보험 전업	방문컨설팅대리점	개인·법인	규모가 1명에서 수백 명까지 다양
		내점형점포	개인	한 개 점포에서 전국까지 규모 다양
		프로(전업)대리점	개인·법인	주로 소규모, 손보의 핵심 대리점
	부업 (겸업)형	세무·회계사대리점	법인	소규모에서 중규모까지 분포
		금융기관대리점	개인	은행 및 증권회사 등 방카슈랑스
		기업대리점	개인·법인	대기업이 담당자를 배치하여 자체적으로 수요를 관리
		기타 부업(겸업) 대리점	개인·법인	소규모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수요 관리

자료: 일본 OLICD(2017)를 일부 수정함

○ 비전속대리점은 고객의 자택 또는 직장 등에 보험모집인이 직접 방문하여 영업하는 방문모집형 컨설팅대리점과 고객이 대리점 점포에 직접 내점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내점형점포 등이 존재함

- 내점형점포의 경우 주로 GA대리점이 전국에 점포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로 대형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숍 등 내점형점포를 개설하여 전국에 확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부업(겸업)형 대표적인 형태로는 금융기관대리점(방카슈랑스), 세무·회계사대리점, 기업대리점 등이 있음
 - 방카슈랑스는 법률상 비전속 금융기관대리점으로 은행 등의 창구에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을 판매하는 채널로, 2002~2008년 동안 보험상품 판매가 종목별로 단계적으로 허용됨
 - 세무·회계사대리점은 세무·회계사가 본업인 세무·회계업무를 영위하면서 주요 고객인 법인 등에게 퇴직연금, 단체상해보험, 기업성보험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임
 - 기업대리점은 대기업이 회사 내에 대리점을 개설하여 주로 종업원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생명보험, 퇴직연금 등 단체보험, 기업성 손해보험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임

■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보험대리점은 전업대리점과 방카슈랑스이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부업(겸업)대리점임

- 생명보험의 전업대리점과 방카슈랑스는 일본 생명보험시장에서 각각 17.8%, 5.4% 비중을 차지함
- 손해보험의 부업(겸업)대리점은 자동차영업 및 자동차수리업 등의 소규모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업형태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일본 손해보험시장에서 80% 이상을 차지함

■ 1996년에 도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독립된 보험중개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고객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의미함

- 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중개사와 손해보험중개사로 구분되고, 주로 기업성 단체보험을 판매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0.6% 정도에 불과하는 등 영업활동이 미진한 실정임

2. 판매채널 현황

■ 일본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보험판매 채널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 주로 생명·손해 보험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모집종사자와 대리점 현황을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생명보험 판매채널 비중은 생명보험문화센터가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통계를,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대리점 판매현황 통계를 사용함

〈생명보험〉

■ 일본 생명보험협회(2019)에 의하면 생명보험 모집종사자와 대리점 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각각 124만 3천 명, 85,862개인 것으로 나타남

○ 종류별 모집인 수는 생명보험회사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약 23만 4천 명이고, 방카슈랑스를 포함한 은행 및 보험 대리점에 소속된 모집인 수가 100만 9천 명인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로 인한 영업직원 은퇴¹⁾와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라 영업직원 수는 2000년 약 30만 명 정점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대리점 모집인 수는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라 2001년 약 29만 명에서 증가세로 전환 이후 2010년부터 정체하고 있음

〈표 2〉 일본의 생명보험 종사자 및 대리점 수 추이

(단위: 천 명, 개)

구분	모집인 수			대리점 수		
	영업직원 수	대리점 모집인 수	계	개인대리점 수	법인대리점 수	계
2010	241	989	1,230	68,046	34,820	102,866
2011	237	1,005	1,242	64,470	34,694	99,164
2012	234	1,011	1,245	61,298	34,809	96,107
2013	229	1,015	1,244	56,938	34,714	91,652
2014	228	992	1,220	59,700	35,218	94,918
2015	230	999	1,229	57,786	35,199	92,985
2016	232	1,003	1,235	55,805	35,306	91,111
2017	233	1,012	1,245	53,537	35,113	88,650
2018	234	1,009	1,243	51,169	34,693	85,862

자료: 日本生命保險協會(2019. 10), “生命保險事業概況 2019”

1) 김혜란(2019), 『OLICD 2019 출장보고서』

○ 종류별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과 방카슈랑스를 포함한 법인대리점이 각각 51,169개, 34,693개로 나타남

- 최근 금융청의 대리점 소비자 보호규제 강화와 모집체계 개선 등 규제 강화 정책과 사업 효율성 개선에 따라 개인대리점 간의 통폐합이 진행되어 2013년을 기점으로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 수가 감소 또는 정체하고 있음

■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 조사(2018)에 의하면 전체 판매채널에서 생명보험회사 영업직원의 비중이 53.7%로 나타나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핵심임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높은 생명보험 판매채널은 보험대리점 창구·영업직원(17.8%), 방카슈랑스(5.4%), 회사·노조(3.4%), 인터넷(3.3%), TV, 신문 등의 홈쇼핑(3.3%), 생명보험회사 창구(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 일본의 생명보험 가입 시 판매채널 구성비¹⁾

(단위: %)

구분	2006	2009	2012	2015	2018
생명보험회사 영업직원	66.3	68.1	68.2	59.4	53.7
생명보험회사 창구	2.1	1.9	2.5	3.1	2.9
보험대리점 창구·영업직원	7.0	6.4	6.9	13.7	17.8
내점형점포 창구	-	-	-	4.7	7.8
보험대리점 영업직원	-	-	-	9.0	9.9
우체국 창구·영업직원	-	2.9	2.1	3.0	4.2
방카슈랑스	3.3	2.6	4.3	5.5	5.4
인터넷	1.8	2.9	4.5	2.2	3.3
TV, 신문 등 홈쇼핑	7.3	5.7	4.3	3.4	3.3
회사·노조	5.2	3.0	3.2	4.8	3.4
기타	6.1	4.9	3.2	4.1	5.6
불명	0.9	1.3	0.8	0.7	0.6

주: 최근 6년간 생명보험계약 가입 시의 가입 방법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임
 자료: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 각 연도

○ 전통적 영업조직인 생명보험회사 영업직원과 생명보험회사의 창구, 보험대리점 영업직원이 6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터넷과 홈쇼핑 등 신 판매채널은 6.6%에 불과함

○ 2015/2018 대비 비중이 증가한 판매채널은 보험대리점 창구·영업직원(13.7%/17.8%), 내점형점포 창구(4.7%/7.8%), 우체국 창구·영업직원(3%/4.2%), 인터넷(2.2%/3.3%)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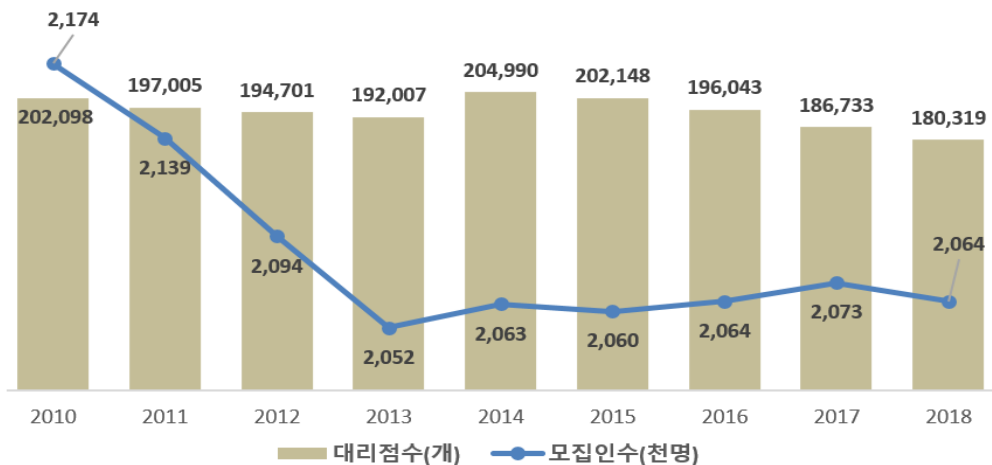
- 반면 감소한 판매채널은 생명보험회사 영업직원(59.4%/53.7%), 생명보험회사 창구(3.1%/2.9%), 방카슈랑스(5.5%/5.4%), 홈쇼핑(3.4%/3.3%)으로 나타남

〈손해보험〉

■ 일본 손해보험협회(2019)에 의하면 손해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 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각각 180,319개, 206만 4천 명인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대리점 수는 2000년 약 51만 개를 정점으로 2013년 약 19만 2천 개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 20만 5천 개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손해보험 모집인 수(부업대리점 모집인 포함)는 2000년 약 114만 명에서 2010년 217만 4천 명으로 증가한 이후 2013년 205만 2천 명으로 급감하였고 이후부터 정체되고 있는 추세임

〈그림 2〉 일본 손해보험대리점 및 모집인 수 추이



자료: 日本損害保險協會(2019. 10), “日本損害保險Fact Book 2019”

■ 손해보험대리점은 전체 수입보험료의 약 90%를 차지하여 일본 손해보험업계의 주력 판매 채널로 운영됨

- 손해보험대리점은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의 비중이 각각 77.2%, 22.8%이고, 개인과 법인대리점 비중이 각각 43.2%, 56.6%를 차지함

■ 손해보험대리점은 전업대리점과 부업대리점의 비중이 각각 18.9%, 81.1%로 부업대리점이 일본 손해보험업계의 주력 판매채널임

○ 종류별 부업대리점 비중은 주업인 자동차영업 및 자동차수리업 사업자가 전체 대리점에 차지하는 비중이 52.3%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부동산업, 도소매업, 건축 및 건설업, 회계사 및 세무사 등의 비중이 각각 11.4%, 2.9%, 2.0%, 2.0%로 나타남

〈표 4〉 일본 손해보험대리점 종류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업종	대리점 수	구성비
전업	전업대리점(보험상품 판매 전문)	34,116	18.9
부업	자동차관련(판매점, 정비공장)	94,278	52.3
	부동산업(임대 및 주택판매회사)	20,474	11.4
	도소매업(자동차 관련 산업 제외)	5,123	2.9
	건설, 건축업	3,659	2.0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3,557	2.0
	여행업(여행회사, 여행대리점)	1,998	1.1
	운송, 통신업	1,639	0.9
	금융업(은행·생보사·대부업 자회사)	2,050	1.1
	기타(제조 및 서비스업 등)	1,425	7.4
합계		180,319	100

자료: 日本損害保險協會, 日本損害保險 Fact Book 2019

3. 최근 판매채널 동향

■ 일본의 보험산업은 2000년 이후 규제 완화와 새로운 판매채널의 등장에 따라 채널 축소 또는 통폐합 추진 등 판매채널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영업직원은 단계적 방카슈랑스(2002~2008년) 시행과 우체국 보험 민영화(2006년)에 따라 2010년까지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음

■ 반면,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은 금융기관(방카슈랑스) 및 우체국 창구 직원²⁾의 모집 자격 취득 증가에 따라 2010년까지 인원이 증가하였음

○ 생명보험대리점과 손해보험대리점은 방카슈랑스와 생·손보사 교차판매 실시(2001년), 법인대리점 M&A 등으로 개인대리점 축소와 대리점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인터넷전문 생명보험회사의 설립이 확대되고 있음

○ 소니손보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동차보험(1999년)을 처음 판매함

○ 2008년 4월 악사다이렉트생명, 2008년 5월 라이프넷생명, 2013년 4월 라쿠텐(樂天)생명, 2016년 2월 SBI생명이 온라인 영업을 시작함

○ 스미토모(住友)생명과 다이이치(第一)생명은 2014년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영업을 시작함

○ 그러나 대면방식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의 보수적 보험소비 성향 등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인터넷 시장점유율은 3.3%에 불과하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생명보험 대형GA가 2000년대부터 내점형 점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후 점포 사업을 전국으로 크게 확장하는 등 대형화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에서 대표적인 대형GA 'Hoken no Madoguchi Group(保険の窓口)³⁾'은 2019년 기준으로 일본 전국에 약 740개⁴⁾ 내점형 점포에서 42개 생명·손해보험회사의 257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 법인대리점으로 발전함⁵⁾

- 동 회사는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종업원 3,326명과 총 224만 건의 판매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실적은 중소형 보험회사인 미즈이(三井)생명의 개인보험 보유 계약고와 유사한 규모임

○ 최근에는 대형GA와 생명보험회사, 지방은행, 증권회사 등이 자본 및 업무제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금융회사와 GA 간의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음

○ 2019년 6월 말 기준 일본 전체 내점형점포 수는 약 2,500개에 달하며, 내점형점포의 수입보험료와 시장점유율은 각각 약 2천억 엔, 7.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⁶⁾

2) 우체국 민영화에 따라 (㉔)우체국보험(간포생명)이 관계회사인 (㉔)우체국을 대리점 판매채널로 활용하고 있음

3) 동 회사는 2014년 종합무역상사인 이토추(ITOCHU)그룹이 24.2%의 지분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됨

4) 직영점 415개, 제휴점포 247개를 포함함

5) <http://www.hokennomadoguchi.co.jp>

■ 최근에는 니혼(日本)생명과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내점형 점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니혼생명은 1987년 처음으로 본사 직영 대리점 성격의 내점형점포인 ‘라이프 프라자’를 개설한 이후 2015년 자회사로 확대 개편하였음

- 2019년에는 내점형 대리점에서 전문적 영업하는 보험회사인 ‘하나사쿠(Hanasaku) 생명’을 설립하였음⁶⁾

○ 2019년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내점형점포 수는 니혼생명 99개, 다이이치(第一)생명 74개, 스미토모(住友)생명 71개, 메이지야스다생명 15개임⁸⁾

■ 최근 일본 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대면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가입 니즈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대면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이이치(第一)생명은 대형사 중에서 처음으로 2020년 중에 스마트폰 등에서 사망보험과 종신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보험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⁹⁾

○ MS&AD Insurance Group Holdings¹⁰⁾는 세븐일레븐과 판매제휴를 체결하여 전국 2만 점의 편의점 점포에서 아이오이생명보험의 저렴한 암보험 상품을 2020년 6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함

- 편의점 점포 내에 판매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고 스마트폰 전용앱을 통하여 사전예약이 가능한 체계임

- 기존 편의점의 판매 상품은 자전거보험이나 원데이 레저보험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은 개인형 간단 손해보험상품이 핵심이며, 세븐일레븐은 2019년 182만 건을 판매한 바 있음¹¹⁾

■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생·손보사 교차판매 실시(2001년)와 비대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6) 矢野経済研究所 press release(2019. 10. 28)

7) Nikkei news(2019. 1. 5), “日生の新会社が免許取得”

8) 각 보험회사 Annual Report(2019)

9) Nikkei news(2020. 6. 29), “第一生命がオンライン販売”

10)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보, 미츠이다이렉트손보, 아이오이생명을 자회사로 보유함

11) Nikkei news(2020. 6. 8), “セブン、2万店で生命保険販売”; Nikkei news(2020. 7. 23), “損保大手3社、生保通販参入”

- 전국의 손해보험대리점에서 생명보험 자회사의 상품을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를 시작함
- MS&AD Insurance Group Holdings는 자회사인 아이오이생명의 간편 의료보험과 암 보험상품을 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우편 등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사망보험 등 아이오이생명의 모든 상품을 TV홈쇼핑과 TM을 통해 2020년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함
 - 도쿄해상과 손보재팬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각각 손해보험대리점에서 생명보험 자회사가 공급하는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음¹²⁾

4. 채널별 관련 규정

■ 보험모집인제도는 생명보험모집인제도(1941년)와 손해보험대리점제도(1948년)에 의해 법규화 되었으며, 현행 제도는 1996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에 의해 정비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일본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영업을 할 수 있는 보험모집 자격자는 보험업종에 따라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 소액단기보험모집인¹³⁾ 및 보험중개사임¹⁴⁾

■ 생명보험모집인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대리 또는 매개하는 자를 의미함¹⁵⁾

- 보험업법은 생명보험모집인을 생명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내근직원, 영업직원), 생명보험회사 지점장이 고용한 모집인, 생명보험대리점과 그 임원, 생명보험대리점의 사용인으로 제한함¹⁶⁾

12) Nikkei news(2020. 7. 22), “損保ジャパンが非対面販売”

13) “소액단기보험업”이란 보험업 중에서 보험기간이 2년 이내이며, 보험금액이 일천만 엔 이하인 보험만의 인수를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소액단기보험모집인”은 이러한 보험을 모집하기 위해 등록한 자를 의미함

14) 보험업법(2020년 1월 22일 기준, 이하 동일) 제2조 23항, 제275조 1항 제4조 관련

15) 보험업법 제2조 제24항

16) 생명보험모집인의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음(石田満(2017), 保険業法, pp. 614~617)

① 생명보험회사의 임원

② 생명보험회사의 사용인: 생명보험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내근직원과 영업직원을 의미하며, 영업직원은 생명보험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협의의 영업직원과 위임관계에 있는 촉탁 영업직원으로 구분됨

③ 생명보험회사 임원의 사용인: 생명보험회사의 지점장 등 임원이 고용한 자를 의미하며, 생명보험회사와 고용관계는 없지만 사용인은 생명보험회사의 임원을 위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음. 최근 이러한 종류의 모집인은 사라지고 있음

④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 생명보험회사의 촉탁 영업직원과 생명보험대리점이 있음. 생명보험

■ 손해보험모집인은 보험업법상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대리 또는 매개하는 자를 의미함¹⁷⁾

○ 보험업법은 손해보험모집인을 손해보험회사 임원, 손해보험회사의 사용인(내근직원 또는 소속 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과 그 임원, 손해보험대리점의 사용인¹⁸⁾으로 제한함

■ 보험중개사는 비전속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중립적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매개하는 자로 1996년 전면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처음 도입됨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임직원,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과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¹⁹⁾

대리점은 다시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생명보험 법인대리점에 소속된 대리점 지점의 경우 재위탁을 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음

- ⑤ 생명보험대리점의 사용인: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대리점의 지휘감독·명령에 의해 보험모집을 하는 모집인을 의미함. 금융청은 보험모집 재위탁을 금지하고, 2015년 4월부터 대리점 사용인을 고용관계에 있는 자 즉, 정사원, 파견사원, 출향사원(원래 소속된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출향을 받는 회사에서 일하는 제도)으로 제한함(コメントの概要及びコメントに対する金融庁の考え方 2014. 3. 18)

17) 보험업법 제275조 제1항

18) 생명보험대리점 사용인과 고용 요건이 동일함

19) 보험업법 제289조 제1항 7호

[부록] 해외 보험산업 통계

1. 미국¹⁾

가. 생명보험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²⁾는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였으나, 신계약 건수는 종신보험, 유니버설보험의 감소로 0.1% 감소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분기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분	연납화 신계약 보험료			신계약 건수		
	2019	2020	증가율	2019	2020	증가율
1/4	2,575	2,588	1.0	1,424	1,409	-0.1
2/4	2,808	-	-	1,410	-	-
3/4	2,664	-	-	1,329	-	-
4/4	3,456	-	-	1,370	-	-
합계	2,575	2,588	1.0	1,424	1,409	-0.1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19년 4/4분기 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³⁾ 정기보험, 종신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

○ 2019년 4/4분기 유니버설 보험이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순서임

- 1) 미국 보험산업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2) 미국 보험시장의 규모는 신계약 연납화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연납화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정기납보험료의 합계임(연납화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3)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투자 성과에 따라 해약환급금 규모가 변경되는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및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보험임

- 신계약 건수의 경우, 종신보험과 유니버설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1% 감소하였으나,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1% 증가하였음
- 신계약 건수의 비중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43%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유니버설, 변액유니버설 순서임

〈표 2〉 2019년 4/4분기 미국 생명보험 상품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증가율	시장점유율	증가율	시장점유율
유니버설	31.0	38.0	-1.0	13.0
변액유니버설	18.0	8.0	13.0	1.0
정기	4.0	21.0	1.0	43.0
종신	3.0	33.0	-6.0	43.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20년 1/4분기 유니버설보험, 종신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지만,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
- 2020년 1/4분기 종신보험이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유니버설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순서임
- 신계약 건수의 경우, 유니버설보험과 종신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씩 감소하였지만,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6% 증가하였음
- 신계약 건수의 비중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44%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유니버설, 변액유니버설 순서임

〈표 3〉 2020년 1/4분기 미국 생명보험 상품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증가율	시장점유율	증가율	시장점유율
유니버설	-3.0	34.0	-6.0	11.0
변액유니버설	3.0	7.0	8.0	1.0
정기	8.0	24.0	6.0	44.0
종신	-1.0	35.0	-6.0	44.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19년 4/4분기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Full Service Broker-Dealer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Full Service Broker-Dealer의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의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18%임
- 개인독립대리점의 경우,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10% 증가함
- 직접판매의 경우,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 소폭 상승하였으나, 신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 하락함

〈표 4〉 2019년 4/4분기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전속대리점	2.0	-4.0
교차판매대리점	-5.0	-6.0
중개사	9.0	0.0
개인독립대리점	7.0	10.0
Full Service Broker-Dealer	13.0	18.0
직접판매	4.0	-1.0
은행	3.0	-7.0
직급	-7.0	-12.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개인독립대리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개인독립대리점의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의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 12%임
- 교차판매대리점의 경우,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8% 증가함
- 직접판매의 경우,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 소폭 상승하였으나, 신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 하락함

〈표 5〉 2020년 1/4분기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전속대리점	1.0	-5.0
교차판매대리점	7.0	8.0
중개사	0.0	5.0
개인독립대리점	9.0	12.0
Full Service Broker-Dealer	-9.0	-2.0
직접판매	3.0	-6.0
은행	-13.0	-10.0
직급	-13.0	-20.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19년 4/4분기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를 살펴보면 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정기보험은 독립설계사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종신보험은 전속설계사 비중이 가장 높음

○ 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의 독립설계사 비중은 각각 79%, 63%, 43%임

○ 종신보험의 경우, 전속설계사 비중은 66%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독립설계사 비중이 높음

〈표 6〉 2019년 4/4분기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전속	독립	직접	기타	전속	독립	직접	기타
유니버설	18.0	79.0	6.0	5.0	34.0	61.0	1.0	4.0
변액유니버설	32.0	63.0	2.0	3.0	61.0	37.0	1.0	1.0
정기	37.0	43.0	7.0	13.0	46.0	31.0	9.0	14.0
종신	66.0	18.0	12.0	4.0	41.0	15.0	32.0	12.0
합계	39.0	50.0	6.0	5.0	42.0	28.0	18.0	12.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를 살펴보면 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정기보험은 독립설계사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종신보험은 전속설계사 비중이

가장 높음

- 유니버셜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정기보험의 독립설계사 비중은 각각 80%, 61%, 43%임
- 종신보험의 경우, 전속설계사 비중은 63%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독립설계사 비중이 높음

〈표 7〉 2020년 1/4분기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전속	독립	직접	기타	전속	독립	직접	기타
유니버셜	19.0	80.0	0.0	1.0	33.0	64.0	1.0	2.0
변액유니버셜	38.0	61.0	0.0	1.0	65.0	35.0	0.0	0.0
정기	37.0	43.0	7.0	13.0	45.0	31.0	10.0	14.0
종신	63.0	18.0	13.0	6.0	36.0	14.0	33.0	17.0
합계	40.0	48.0	6.0	6.0	40.0	28.0	18.0	14.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손해보험

- 2019년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1,52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발생손해액은 1,1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함

- 원수손해율은 75.3%로 전분기 대비 6.4%p 증가함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1,64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발생손해액은 1,0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함

- 원수손해율은 64.2%로 전분기 대비 11.1%p 하락함

〈표 8〉 미국 손해보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2019	2020
		4/4	1/4
원수보험료	금액	152,705	164,356
	증가율	6.2	6.2
발생손해액	금액	115,051	105,445
	증가율	1.0	3.6
원수손해율		75.3	64.2
보험영업이익	금액	585	7092
	증가율	-117.7	18.2
계약자 배당금	금액	2,288	832
	증가율	48.2	7.2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1,703	6,260
	증가율	-64.9	19.9
이자 및 배당수익	금액	14,050	13,177
	증가율	-2.7	0.2
실현자본이익	금액	2,984	1,092
	증가율	174.5	-31.6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7,034	14,269
	증가율	9.7	-3.3
세전영업이익 ²⁾	금액	12,392	19,448
	증가율	22.0	2.6
당기순이익 ³⁾	금액	13,369	17,887
	증가율	30.8	0.1
자기자본 (Surplus) ⁴⁾	금액	847,813	771,893
	증가율	14.2	-1.0
지급준비금	금액	654,158	655,034
	증가율	3.3	3.4
자기자본이익률 ⁵⁾		6.4	8.8
합산비율		102.1	94.9

주: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이자 및 배당수익 + 기타이익

3) 당기순이익 = 세전영업이익 + 실현자본이익 + 세금

4)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보험계약자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임

5) 자기자본(Surplus)에 대한 이익률로 Rate of return on average surplus로 표기함

자료: ISO(2020),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First-Quarter 2020"

■ 손해보험산업의 2019년 4/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한 133억 달러를 기록함

○ 2019년 4/4분기 총보험영업이익은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4.9% 감소함

○ 총투자영업이익은 9.7% 증가한 170억 달러임

- 이자 및 배당수익은 1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함

- 실현자본이익은 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4.5% 증가함

■ 2019년 4/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104.6%에서 2.5%p 하락한 102.1%,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 동기 5.5%에서 0.9%p 상승한 6.4%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2020년 1/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179억 달러를 기록함

○ 2020년 1/4분기 총보험영업이익은 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함

○ 총투자영업이익은 3.3% 감소한 143억 달러임

- 이자 및 배당수익은 1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함

- 실현자본이익은 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함

■ 2020년 1/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95.6%에서 0.7%p 하락한 94.9%,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 동기 9.4%에서 0.6%p 하락한 8.8%를 기록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에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민영건강보험이 발달해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의료공급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등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건강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산업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4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⁴⁾

가. 생명보험⁵⁾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⁶⁾는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한 224억 3,000만 파운드를 기록함

○ 투자 및 저축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33억 4,900만 파운드임
- 투자형 상품(8.0%) 및 역외영업 상품(2.3%)의 신규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 ISA상품의 신규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하여 1/4분기 전체 투자 및 저축성보험의 신규보험료가 증가함

○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3억 3,900만 파운드임

○ 연금상품⁷⁾ 신규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한 156억 510만 파운드임

- 신탁형 연금 신규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51.2% 증가한 79억 800만 파운드로 실적이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직장가입형 연금에서도 26.8%의 눈에 띄는 증가가 나타남

■ 2020년 1/4분기 퇴직소득보험⁸⁾ 신규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31억 3,700만 파운드임

4)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부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5) 영국 손해보험시장 실적은 연도별 자료만 발표되며, 2019년 데이터 출시 이후 업데이트 예정임

6)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7) 연금 상품은 근로자와 연금사업자 간 개인계약(Personal Contract-based)인 개인연금과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개인연금은 또 다시 개인의 보험료 부담형태에 따라 개인가입형(Individual Pension)과 직장가입형(Work-based Pension)으로 구분됨. 개인가입형 연금은 보험료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등이 있음. 직장가입형 연금은 보험료를 직장이 일정 부분 보조하는 형태로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Group SIPP 등이 있음. 신탁형 연금(Trust-based Pension)은 신탁에 근거한 연금으로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TIP(Trustee Investment Plan), Bulk Buyout 등이 해당됨

8)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소득 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 상품의 합계임

〈표 9〉 영국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상품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성보험 (Investments & Saving)	금액	3,129.0	3,351.8	3,605.4	3,278.1	13,364.3	3,349.0
	증가율 ¹⁾	-5.6	-6.5	8.1	4.5	-0.1	7.0
	구성비	16.6	11.6	11.8	12.3	12.4	14.9
	투자형 (Investment)	금액	982.4	1,018.3	988.8	928.8	3,918.3
		증가율	-8.9	-6.5	-10.5	-7.3	-8.3
		구성비	5.2	3.5	3.2	3.5	4.0
	ISA	금액	1,291.4	1,520.5	1,713.6	1,411.6	5,937.0
		증가율	-6.4	-1.2	34.3	26.1	11.7
		구성비	6.9	5.2	5.6	5.3	5.5
	역외영업 (Offshore)	금액	851.9	809.3	899.4	933.7	3,494.4
		증가율	-0.2	-15.1	-5.2	-7.9	-7.3
		구성비	4.5	2.8	2.9	3.5	3.2
보장성보험 (Protection)	금액	331.2	318.3	283.3	269.1	1,201.9	339.0
	증가율	14.8	6.4	4.5	5.1	7.8	2.3
	구성비	1.8	1.1	0.9	1.0	1.1	1.5
연금 (Pension)	금액	12,054.4	21,826.9	23,236.4	19,821.7	79,654.8	15,605.2
	증가율	-49.4	48.6	37.1	21.2	9.5	29.5
	구성비	64.1	75.2	75.7	74.6	73.9	69.6
	개인가입형 (Individual)	금액	3,737.1	3,577.4	3,378.2	3,329.9	14,022.6
		증가율	-27.0	-19.6	-9.8	-12.1	-18.0
		구성비	19.9	12.3	11.0	12.5	13.0
	직장가입형 (Work-Based)	금액	3,086.2	4,670.0	3,605.0	3,584.5	17,661.1
		증가율	13.4	20.2	20.0	1.7	25.5
		구성비	16.4	16.1	11.8	13.5	16.4
	신탁형 (Trust-based)	금액	5,231.1	13,579.5	16,253.1	12,907.3	47,971.1
		증가율	-67.3	113.7	59.5	42.7	15.3
		구성비	27.8	46.8	53.0	48.6	44.5
퇴직소득보험 (Retirement Income)	금액	3,289.8	3,514.5	3,552.5	3,192.6	13,549.3	3,137.2
	증가율	1.9	-0.9	-2.3	-6.1	-1.9	-4.6
	구성비	17.5	12.1	11.6	12.0	12.6	14.0
합계 ²⁾	금액	18,804.4	29,011.6	30,677.5	26,561.4	107,770.3	22,430.3
	증가율	-38.7	31.2	26.8	14.7	6.6	19.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전체 자료는 ABI 데이터 상 합계이며, 포함되지 않은 기타 자료는 위 표상에 나타나 있지 않음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

■ 2020년 1/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Independent Advice)⁹⁾이 가장 높고,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¹⁰⁾, 無자문(Non-advised)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정기납 기준 독립자문 형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5%p 증가한 73.3%임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독립자문 형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보장성보험(96.9%), 직장가입형 연금보험(74.7%), 역외영업(73.3%) 순임
- 전체 정기납 기준 제한적 자문 형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8%p 하락한 15.5%임
 - 종목별로는 신탁형 연금보험(24.4%), 개인 가입형 연금보험(21.7%), 개인 보장성보험(20.6%)에서 제한적 자문 형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정기납 기준 無자문 형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3%p 증가한 11.2%임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성보험(81.9%)에서 無자문 형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역외영업(24.8%), 개인 보장성 보험(22.7%) 순임

■ 2020년 1/4분기 일시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일시납 기준 독립자문 형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6.4%p 감소한 61.5%임
 - 종목별로는 신탁형 연금보험 및 종신연금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독립자문 형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가입형 연금보험(74.9%), 역외영업(69.5%), 직장가입형 연금보험(67.2%) 순임
- 전체 일시납 기준 제한적 자문 형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5%p 상승한 17.2%임
 - 종목별로는 역외영업(30.4%), 투자 및 저축성보험(25.1%), 소득인출(19.7%)에서 제한적 자문 형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일시납 기준 無자문 형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4.9%p 상승한 21.3%임

9) 독립 자문(Independent Advice)은 상품공급업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특정 시장의 전체 상품을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10)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은 복수의 상품공급업자 상품을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종목별로는 종신연금보험(75.9%)과 신탁형 연금보험(67.9%)에서 無자문 형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가입형 연금보험(28.9%) 순임

〈표 10〉 2020년 1/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2019 Q1	2020 Q1	2019 Q1	2020 Q1	2019 Q1	2020 Q1	2019 Q1	2020 Q1	2019 Q1	2020 Q1	2019 Q1	2020 Q1
투자 및 저축성	0.0	0.0	65.2	53.5	25.2	18.1	26.7	25.1	74.8	81.9	8.1	21.5
개인가입형 연금	66.9	59.4	82.5	74.9	15.8	21.7	12.4	18.3	17.3	18.9	5.1	6.8
직장가입형 연금	75.5	74.7	70.3	67.2	16.4	15.4	9.2	3.9	8.1	9.9	20.6	28.9
신탁형 연금	37.3	57.2	34.3	31.8	21.5	24.4	0.5	0.4	41.2	18.4	65.2	67.9
역외영업	57.1	73.3	71.0	69.5	3.2	1.9	28.9	30.4	39.7	24.8	0.1	0.2
개인보장	55.7	56.8	-	-	23.4	20.6	-	-	20.9	22.7	-	-
그룹보장	93.7	96.9	-	-	0.3	0.2	-	-	6.0	2.9	-	-
종신연금	-	-	27.0	22.9	-	-	1.6	1.2	-	-	71.4	75.9
소득인출	-	-	65.1	58.0	-	-	16.9	19.7	-	-	18.0	22.3
전체 ³⁾	72.8	73.3	67.9	61.5	16.3	15.5	15.8	17.2	11.0	11.2	16.4	21.3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 설계사 포함임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전체 정기납 합계 및 전체 일시납 합계 금액 대비 모집형태별 비중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 및 연도별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크게 4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므로 개인 보장성보험과 단체 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 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중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	투자 및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	개인가입형 연금
Work-based Pension	직장가입형 연금
Trust-based Pension	신탁형 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 FY2019 4/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10조 3,454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세는 둔화되었으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축소됨

■ FY2019 4/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8조 3,076억 엔임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모두 둔화됨

〈표 11〉 일본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4/4	연간	1/4	2/4	3/4	4/4
수입보험료	금액	112,309	433,299	105,040	103,110	100,186	103,454
	증가율 ¹⁾	1.6	3.9	-1.0	-4.5	-6.3	-7.9
생명보험	금액	89,033	339,159	80,096	78,567	73,487	79,927
	증가율	3.7	4.5	-2.2	-7.1	-12.2	-10.2
손해보험	금액 ²⁾	23,276	94,140	24,945	24,543	26,699	23,527
	증가율	-5.4	1.5	2.8	4.9	15.1	1.1
지급보험금	금액	84,209	325,181	77,081	76,358	82,738	83,076
	증가율	1.8	2.9	-1.1	0.4	-5.0	-1.3
생명보험	금액	68,310	263,207	64,323	64,035	63,863	67,694
	증가율	-1.9	-2.0	-3.1	3.0	-3.8	-0.9
손해보험	금액	15,899	61,974	12,758	12,323	18,875	15,382
	증가율	22.0	30.7	10.7	-11.2	-8.7	-3.3

주: 1) 전년 동기 대비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및 일본손해보험협회(2020년 8월 28일 기준)

나. 생명보험¹¹⁾

〈신계약 가입금액〉

■ FY2019 4/4분기 생명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7% 감소한 15조 8,296억 엔임

- 개인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한 13조 3,655억 엔을 기록함
 - 종신보험, 정기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1%, 29.3% 감소함
 - 양로보험, 기타 생사혼합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0%, 7.3% 감소함
 - 생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50.4% 감소한 1,163억 엔으로 집계됨
- 개인연금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1조 4,361억 엔으로 나타남
 - 정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감소, 63.5% 증가한 1조 1,319억 엔, 3,042억 엔을 기록함
- 단체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한 1조 280억 엔을 기록함
 - 단체정기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하였으나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함

11)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계약종목에 따라 분기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종목별 생명보험 변화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 신계약 가입금액을 대상으로 분석함. 여기서 말하는 가입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의미함

〈표 12〉 일본 생명보험 신계약 가입금액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4/4	1/4	2/4	3/4	4/4	연간
개인보험	금액	181,704	136,347	132,518	129,990	133,655	532,510
	증가율 ¹⁾	12.8	-22.6	-23.5	-24.5	-26.4	-24.3
	구성비	87.6	85.3	85.0	83.0	84.4	84.4
	사망	금액	152,617	107,444	107,335	107,104	433,249
		증가율	14.2	-26.0	-25.6	-23.7	-25.6
		구성비	73.6	67.2	68.8	68.4	68.7
	종신보험	금액	33,197	30,721	28,460	24,778	109,479
		증가율	3.5	1.2	-11.4	-25.9	-23.1
	정기보험	금액	100,744	63,437	65,899	67,972	268,529
		증가율	29.1	-34.2	-28.4	-22.9	-29.3
	생사혼합	금액	26,741	27,017	23,716	21,666	93,524
		증가율	7.6	-5.8	-11.7	-24.0	-15.6
		구성비	12.9	16.9	15.2	13.8	13.3
	양로보험 ²⁾	금액	9,930	10,460	7,230	4,711	26,375
		증가율	0.6	-0.7	-29.8	-55.2	-36.1
	기타	금액	12,755	11,817	11,312	12,169	47,126
		증가율	0.0	-19.5	-12.2	-11.8	-7.3
	생존	금액	2,346	1,886	1,468	1,220	5,737
		증가율	-9.5	-19.6	-32.1	-61.4	-42.7
		구성비	1.1	1.2	0.9	0.8	0.9
개인연금보험	금액	13,557	12,229	13,143	12,888	14,361	52,621
	증가율	3.6	0.7	-2.5	-8.7	5.9	-1.3
	구성비	6.5	7.7	8.4	8.2	9.1	8.3
	정액연금	금액	11,697	10,271	10,859	10,670	43,119
		증가율	0.3	0.6	-4.2	-10.0	-3.2
	변액연금	금액	1,861	1,959	2,283	2,218	9,502
		증가율	0.0	1.1	6.5	-1.8	63.5
단체보험	금액	12,228	11,219	10,281	13,787	10,280	45,567
	증가율	-36.0	-4.5	-14.1	22.5	-15.9	-3.5
	구성비	5.9	7.0	6.6	8.8	6.5	7.2
	단체정기 ³⁾	금액	7,154	4,182	5,156	4,829	19,264
		증가율	0.3	-27.1	-36.8	5.1	-28.8
	단체신용생명	금액	5,072	7,038	5,122	8,960	26,303
		증가율	0.0	17.2	34.3	34.6	22.1
합계	금액	207,490	159,795	155,942	156,665	158,296	630,698
	증가율	7.4	-20.1	-21.6	-20.7	-23.7	-21.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하였는데,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또는 고도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FY2019 4/4분기 생명보험 지급률¹²⁾은 전년 동기 대비 8.0%p 증가한 84.7%를 기록함
 ○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7조 9,927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지급보험
 금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6조 7,694억 엔을 나타냄

〈표 13〉 일본 생명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3/4	4/4	1/4	2/4	3/4	4/4
수입보험료	금액	83,702	89,033	80,095	78,567	73,487	79,927
	증가율 ¹⁾	5.0	3.7	-2.2	-7.1	-12.2	-10.2
지급보험금	금액	66,374	68,310	64,323	64,035	63,863	67,694
	증가율	0.6	-1.9	-3.1	3.0	-3.8	-0.9
지급률 ²⁾		79.3	76.7	80.3	81.5	86.9	84.7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19 4/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 397조 9,098억 엔에서 392조 7,351억 엔으로 감소함
- 운용자산 중 현금 및 예금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2.2%에서 2.7%로 상승하였으나, 총자산 대비 대출금의 비중은 전분기 7.8%에서 7.7%로 하락함
- 한편,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부동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와 같은 0.5%, 0.5%, 1.5%임
- 주식, 외화증권의 감소로 총자산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83.0%에서 81.9%로 하락함
- 국채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37.6%에서 38.5%로 증가함
 - 반면 주식, 외화증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5.8%, 25.7%에서 4.8%, 25.0%로 감소하였음

1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표 14〉 일본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4/4		1/4		2/4		3/4		4/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금	89,949	2.3	86,882	2.2	93,526	2.4	89,078	2.2	105,323	2.7
단기자금	16,549	0.4	14,579	0.4	18,309	0.5	19,043	0.5	21,088	0.5
매입금전채권	20,007	0.5	17,900	0.5	20,151	0.5	19,200	0.5	17,892	0.5
금전신탁	61,714	1.6	62,575	1.6	68,571	1.7	75,725	1.9	69,991	1.8
유가증권	3,203,096	82.6	3,230,989	82.8	3,257,836	82.5	3,302,538	83.0	3,218,383	81.9
- 국채	1,482,231	38.2	1,490,753	38.2	1,493,243	37.8	1,497,113	37.6	1,512,025	38.5
- 지방채	109,401	2.8	107,609	2.8	106,340	2.7	103,954	2.6	101,342	2.6
- 회사채	271,082	7.0	275,712	7.1	281,856	7.1	284,575	7.2	283,831	7.2
- 주식	217,828	5.6	208,056	5.3	213,210	5.4	231,718	5.8	187,662	4.8
- 외화증권	965,262	24.9	990,852	25.4	1,003,163	25.4	1,022,055	25.7	981,284	25.0
대출금	318,786	8.2	313,785	8.0	311,596	7.9	309,489	7.8	301,986	7.7
부동산	60,442	1.6	60,453	1.5	60,444	1.5	60,489	1.5	60,489	1.5
운용자산 ²⁾	3,803,210	98.1	3,820,457	97.9	3,865,802	97.9	3,904,784	98.1	3,831,192	97.6
비운용자산	74,736	1.9	82,681	2.1	82,388	2.1	74,314	1.9	96,159	2.4
총자산 ³⁾	3,877,946	100.0	3,903,138	100.0	3,948,190	100.0	3,979,098	100.0	3,927,351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19 4/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3.8% 감소한 1,666억 엔임

■ 자본이익률은 전분기에 비해 2.2%p 하락한 2.9%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이익률은 전분기 0.3%에서 0.2%로 하락함

○ 자본은 22조 7,157억 엔으로 전분기 대비 16.3% 감소하였고,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1.3% 감소한 392조 7,351억 엔을 기록함

〈표 15〉 일본 생명보험 실적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3/4	4/4	1/4	2/4	3/4	4/4
당기순이익	금액	2,982	6,357	3,708	3,445	3,441	1,666
	증가율 ¹⁾	-29.0	38.1	-0.7	-21.5	15.4	-73.8
자본	금액	220,918	250,663	244,940	261,325	271,412	227,157
	증가율 ²⁾	-7.5	13.5	-2.3	6.7	3.9	-16.3
총자산	금액	3,838,983	3,877,946	3,903,138	3,948,190	3,979,098	3,927,351
	증가율 ²⁾	-0.8	1.0	0.6	1.2	0.8	-1.3
자본이익률 ³⁾		5.4	10.1	6.1	5.3	5.1	2.9
총자산이익률 ³⁾		0.3	0.7	0.4	0.3	0.3	0.2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3) 연율화 수치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FY2019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2조 3,527억 엔으로 집계됨

-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0.2%, 5.7% 증가한 3,997억 엔, 514억 엔, 182억 엔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증가, 8.0% 감소한 1조 576억 엔, 2,313억 엔으로 집계됨
- 상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2,184억 엔이며, 특종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3,760억 엔을 기록함

〈표 16〉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²⁾		FY2018	FY2019				
		4/4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3,867	3,893	4,811	4,341	3,997	17,043
	증가율 ³⁾	-2.6	9.7	18.8	3.3	3.4	8.8
	구성비	16.6	15.6	19.6	18.3	17.0	17.6
해상	보험료	513	594	519	499	514	2,125
	증가율	-8.0	0.0	8.3	2.5	0.2	2.6
	구성비	2.2	2.4	2.1	2.1	2.2	2.2
운송	보험료	173	195	172	181	182	731
	증가율	-0.5	5.4	6.8	5.3	5.7	5.8
	구성비	0.7	0.8	0.7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10,391	10,682	10,228	10,366	10,576	41,853
	증가율	-2.8	0.9	1.3	1.3	1.8	1.3
	구성비	44.6	42.8	41.7	43.7	45.0	43.3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515	2,595	2,452	2,292	2,313	9,653
	증가율	5.6	5.6	5.1	-5.8	-8.0	-0.9
	구성비	10.8	10.4	10.0	9.7	9.8	10.0
상해	보험료	2,229	2,799	2,453	2,383	2,184	9,819
	증가율	-17.5	-2.5	-0.6	8.2	-2.0	0.5
	구성비	9.6	11.2	10.0	10.1	9.3	10.2
특종	보험료	3,590	4,187	3,907	3,636	3,760	15,490
	증가율	-13.1	3.9	2.7	4.7	4.7	4.0
	구성비	15.4	16.8	15.9	15.3	16.0	16.0
합계	보험료	23,276	24,945	24,543	23,699	23,527	96,714
	증가율	-5.4	2.8	4.9	2.2	1.1	2.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지급률〉

■ FY2019 4/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p 감소한 65.4%를 기록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2조 3,527억 엔이며,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1조 5,382억 엔임

〈표 17〉 일본 손해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3/4	4/4	1/4	2/4	3/4	4/4
원수보험료	금액	23,200	23,276	24,945	24,543	23,699	23,527
	증가율 ¹⁾	4.4	-5.4	2.8	4.9	2.2	1.1
지급보험금	금액	20,675	15,899	12,758	12,323	18,875	15,382
	증가율	67.2	22.0	10.7	-11.2	-8.7	-3.3
지급률 ²⁾		89.1	68.3	51.1	50.2	79.6	65.4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원수보험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19 4/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분기 31조 5,703억 엔에서 30조 6,480억 엔으로 감소함

○ 운용자산 중 매입금전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0.9%에서 0.6%로 감소하였으며, 환매조건부채권, 금전신탁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와 같은 0.2%, 0.2%임

○ 반면 현금 및 예금, 대출금, 부동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6.6%, 4.7%, 2.7%에서 7.2%, 4.9%, 2.8%로 증가함

○ 유가증권의 경우 국채, 주식의 감소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74.5%에서 72.0%로 하락함

- 총자산 대비 국채, 주식은 각각 전분기 14.0%, 21.3%에서 13.2%, 17.8%로 하락하였으며, 지방채, 기타증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와 같은 1.1%, 1.5%임

- 회사채, 외화증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9.0%, 27.6%에서 9.3%, 29.1%로 증가함

〈표 18〉 일본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4/4		1/4		2/4		3/4		4/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금	21,268	6.7	20,754	6.7	24,437	7.8	20,803	6.6	22,076	7.2
단기자금	1	0.0	0	0.0	1	0.0	50	0.0	104	0.0
환매조건부채권	730	0.2	630	0.2	630	0.2	770	0.2	710	0.2
매입금전채권	1,400	0.4	2,893	0.9	3,313	1.1	2,785	0.9	1,866	0.6
금전신탁	658	0.2	590	0.2	632	0.2	624	0.2	535	0.2
유가증권	234,482	74.4	230,476	74.7	231,938	73.8	235,236	74.5	220,757	72.0
- 국채	46,446	14.7	45,583	14.8	45,309	14.4	44,299	14.0	40,585	13.2
- 지방채	3,216	1.0	3,204	1.0	3,303	1.1	3,345	1.1	3,306	1.1
- 회사채	26,867	8.5	27,487	8.9	28,127	8.9	28,539	9.0	28,525	9.3
- 주식	66,468	21.1	62,568	20.3	64,073	20.4	67,200	21.3	54,504	17.8
- 외화증권	88,237	28.0	88,176	28.6	86,595	27.5	87,021	27.6	89,168	29.1
- 기타증권	3,248	1.0	3,458	1.1	4,531	1.4	4,832	1.5	4,670	1.5
대출금	14,362	4.6	14,022	4.5	14,317	4.6	14,877	4.7	15,051	4.9
부동산	8,648	2.7	8,585	2.8	8,536	2.7	8,486	2.7	8,567	2.8
운용자산	281,604	89.4	278,009	90.1	283,874	90.3	283,630	89.8	269,667	88.0
비운용자산 ²⁾	33,504	10.6	30,503	9.9	30,541	9.7	32,073	10.2	36,812	12.0
총자산	315,108	100.0	308,513	100.0	314,416	100.0	315,703	100.0	306,48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 대비 증가율로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 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19 하반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0% 감소한 2,791억 엔임

■ 자본이익률은 FY2019 상반기에 비해 3.5%p 증가한 8.2%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이익률은 FY2019 상반기 1.1%에서 1.8%로 증가함

○ 자본은 FY2019 상반기보다 10.4% 감소한 6조 7,773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은 FY2019 상반기보다 2.5% 감소한 30조 6,480억 엔을 기록함

〈표 19〉 일본 손해보험 실적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7	FY2018		FY2019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당기순이익	금액	3,819	417	6,348	1,785	2,791
	증가율 ²⁾	15.5	-85.9	66.2	328.1	-56.0
자본	금액	80,139	80,308	76,771	75,632	67,773
	증가율 ³⁾	0.0	0.2	-4.4	-1.5	-10.4
총자산	금액	323,144	325,817	315,108	314,416	306,480
	증가율 ³⁾	0.0	0.8	-3.3	-0.2	-2.5
자본이익률 ⁴⁾		9.5	1.0	16.5	4.7	8.2
총자산이익률 ⁴⁾		2.4	0.3	4.0	1.1	1.8

주: 1)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반기별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만을 발표하고 있음

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3) 전반기 대비 증가율임

4) 연율화 수치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계약 가입금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단체연금보험,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¹³⁾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 2020년 1/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1조 6,69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 인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모두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크게 축소됨
- 2020년 1/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3,031억 위안임
 - 인보험 및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모두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크게 축소됨
- 2020년 1/4분기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246억 위안으로 집계됨

〈표 20〉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수입보험료	금액	16,322	9,215	8,983	8,125	42,645	16,695
	증가율 ¹⁾	15.9	11.2	8.3	10.5	12.2	2.3
인보험	금액	13,369	6,275	6,218	5,133	30,995	13,734
	증가율	18.0	12.1	8.5	11.9	13.8	2.7
손해보험	금액	2,953	2,940	2,765	2,991	11,649	2,962
	증가율	7.3	9.3	7.9	8.1	8.2	0.3
지급보험금	금액	3,318	2,914	3,179	3,483	12,894	3,031
	증가율	1.5	7.2	1.2	9.9	4.8	-8.6
인보험	금액	1,891	1,423	1,557	1,521	6,392	1,770
	증가율	-6.1	5.7	-3.9	7.1	-0.1	-6.4
손해보험	금액	1,428	1,490	1,622	1,962	6,502	1,261
	증가율	13.8	8.5	6.6	12.3	10.3	-11.7
사업비	금액	1,268	1,268	1,256	1,699	5,491	1,246
	증가율	31.6	15.5	6.9	14.7	16.4	-1.7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13)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중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자산운용〉

■ 2020년 1/4분기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5.6% 증가한 21조 7,193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19조 4,255억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4.8% 증가하였고, 비운용자산은 전분기 대비 12.6% 증가한 2조 2,938억 위안임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였으나 채권, 주식 및 기타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함

○ 예치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대비 0.9%p 상승한 13.2%를 기록하였으나 총자산 대비 채권, 주식 및 기타 자산의 비중은 각각 전분기 31.1%, 11.8% 및 34.8%에서 30.7%, 11.5% 및 34.1%로 하락함

〈표 21〉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운용자산계	금액		170,554	173,672	177,772	185,271	185,271	194,255
	증가율 ²⁾		3.9	1.8	2.4	4.2	12.9	4.8
	구성비		89.3	89.1	89.1	90.1	90.1	89.4
예치금	금액		26,189	26,335	25,213	25,227	25,227	28,621
	증가율		7.5	0.6	-4.3	0.1	3.5	13.5
	구성비		13.7	13.5	12.6	12.3	12.3	13.2
	금액		56,722	59,830	61,427	64,032	64,032	66,765
	증가율		0.6	5.5	2.7	4.2	13.6	4.3
	구성비		29.7	30.7	30.8	31.1	31.1	30.7
	금액		21,126	21,904	22,377	24,365	24,365	24,897
	증가율		9.9	3.7	2.2	8.9	26.8	2.2
	구성비		11.1	11.2	11.2	11.8	11.8	11.5
	금액		66,517	65,603	68,755	71,647	71,647	73,972
	증가율		3.7	-1.4	4.8	4.2	11.7	3.2
	구성비		34.8	33.6	34.4	34.8	34.8	34.1
비운용자산계 ⁵⁾	금액		20,528	21,354	21,829	20,374	20,374	22,938
	증가율		6.8	4.0	2.2	-6.7	6.0	12.6
	구성비		10.7	10.9	10.9	9.9	9.9	10.6
총자산	금액		191,082	195,026	199,601	205,645	205,645	217,193
	증가율		4.2	2.1	2.3	3.0	12.2	5.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 기준임

2) 전분기 대비임

3) 주식은 주식형 펀드를 포함함

4) 기타 자산은 부동산, 인프라시설 자산 등이 있음

5)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¹⁴⁾

〈수입보험료〉

■ 2020년 1/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1조 3,73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 2020년 1/4분기 인보험 중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고성장을 유지함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6%, 11.7% 하락한 1조 798억 위안, 295억 위안을 기록함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2,64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함

〈표 22〉 인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료	13,369	6,275	6,218	5,133	30,995	13,734
	증가율 ¹⁾	18.0	12.1	8.5	11.9	13.8	2.7
생명보험	보험료	10,863	4,164	4,227	3,591	22,754	10,798
	증가율	14.3	7.9	2.4	11.1	9.8	-0.6
건강보험	보험료	2,172	1,804	1,701	1,389	7,066	2,640
	증가율	39.1	23.7	29.1	25.0	29.7	21.5
상해보험	보험료	334	307	289	245	1,175	295
	증가율	24.1	10.6	1.8	0.0	9.2	-11.7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14)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됨.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투자형 상품에는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있음. 중국의 건강보험은 한국과 유사하며 의료보험, 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음

〈지급보험금〉

■ 2020년 1/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77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하락함

○ 인보험 중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각각 1,165억 위안 및 6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및 11.1% 하락하였으나, 건강보험 지급보험금은 54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함

〈표 23〉 인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금	1,891	1,423	1,557	1,521	6,392	1,770
	증가율 ¹⁾	-6.1	5.7	-3.9	7.1	-0.1	-6.4
생명보험	보험금	1,315	837	865	726	3,743	1,165
	증가율	-16.2	-9.1	-21.4	-9.2	-14.7	-11.4
건강보험	보험금	504	516	617	714	2,351	541
	증가율	31.3	42.8	37.0	30.0	34.8	7.3
상해보험	보험금	72	71	75	80	298	64
	증가율	18.2	11.1	6.3	10.5	11.3	-11.1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53.1%로 전분기 대비 0.6%p 하락함

○ 상위 5개사는 China Life, China Pingan Life, CPIC, New China Life 및 Qianhai Life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3.7%, 13.4%, 7.1%, 4.5% 및 4.4%임

○ 한편, 나머지 생명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46.3%에서 46.9%로 상승함

〈표 24〉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1/4
상위 5사	점유율	54.3	52.6	54.9	53.7	53.1
나머지 회사	점유율	45.7	47.4	45.1	46.3	46.9

주: 시장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당기순이익, 자본, 자본이익률〉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4.8%로 전분기에 비해 3.9%p 상승함

○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122억 위안에서 672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1조 3,858억 위안에서 1조 4,077억 위안으로 상승함

〈표 25〉 생명보험회사 실적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당기순이익 ¹⁾	금액	650	922	719	122	2,412	672
자본 ²⁾	금액	12,760	13,109	13,665	13,858	13,858	14,077
자본이익률		5.1	7.0	5.3	0.9	17.4	4.8

주: 1) 당기순이익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기말잔액 기준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¹⁵⁾〉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96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함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중 기업재산보험, 가계재산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농업보험 및 기타 보험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자동차보험 및 보증보험의 비중은 하락함

15) 중국은 원수보험료가 아니고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손해보험 보험료를 발표하고 있음

○ 기업재산보험, 가계재산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농업보험 및 기타 보험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2.2%, 0.7%, 0.7%, 5.4%, 3.0% 및 4.8%에서 5.8%, 1.0%, 1.4%, 8.1%, 6.3% 및 5.1%로 하락하였으나 자동차보험 및 보증보험의 비중은 각각 전분기 대비 10.5%p, 0.5%p 하락한 65.5%, 6.7%를 기록함

〈표 26〉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보험료	2,953	2,940	2,765	2,991	11,649	2,962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업재산보험	보험료	173	118	106	67	464	173
	비중	5.9	4.0	3.8	2.2	4.0	5.8
가계재산보험	보험료	29	23	19	20	91	29
	비중	1.0	0.8	0.7	0.7	0.8	1.0
자동차보험	보험료	1,994	1,972	1,949	2,273	8,188	1,939
	비중	67.5	67.1	70.5	76.0	70.3	65.5
기술보험	보험료	43	29	25	21	118	42
	비중	1.5	1.0	0.9	0.7	1.0	1.4
책임보험	보험료	227	192	173	161	753	241
	비중	7.7	6.5	6.3	5.4	6.5	8.1
보증보험	보험료	190	183	255	216	844	199
	비중	6.4	6.2	9.2	7.2	7.2	6.7
농업보험	보험료	155	291	137	89	672	187
	비중	5.2	9.9	5.0	3.0	5.8	6.3
기타 보험 ²⁾	보험료	142	132	101	144	519	152
	비중	4.8	4.5	3.7	4.8	4.5	5.1

주: 1) 종목별 수입보험료가 2019년부터 공개되기 때문에 종목별 수입보험료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음

2) 기타 보험은 운송보험, 특종보험 등이 있음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2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함

〈표 27〉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보험금	1,428	1,490	1,622	1,962	6,502	1,261
	증가율 ¹⁾	13.8	8.5	6.6	12.3	10.3	-11.7

주: 1)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4.3%로 전분기 대비 3.0%p 상승함

- 상위 5개사는 PICC, China Pingan P&C, CPIC P&C, China Life P&C 및 China Continent P&C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4.7%, 19.7%, 10.6%, 5.8%, 3.5%임
- 한편, 나머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28.7%에서 25.7%로 하락함

〈표 28〉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1/4
상위 5사	72.9	71.3	75.9	71.3	74.3
나머지 회사	27.1	28.7	24.1	28.7	25.7

주: 시장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당기순이익, 자본, 자본이익률〉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2.7%로 전분기에 비해 0.9%p 상승함
 ○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101억 위안에서 157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전분기 5,724억 위안에서 5,793억 위안으로 상승함

〈표 29〉 손해보험회사 실적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당기순이익 ¹⁾	금액	107	230	110	101	548	157
자본 ²⁾	금액	5,263	5,325	5,466	5,724	5,724	5,793
자본이익률		2.0	4.3	2.0	1.8	9.6	2.7

주: 1) 당기순이익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기말잔액 기준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중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자산운용 분석을 위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 및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사용함

○ 보험회사의 그룹별 시장점유율, 당기순이익, 자본 및 자본이익률 분석을 위해 중국보험협회가 발표한 지급능력정보공개(偿付能力信息披露)를 사용함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 및 손해보험을 종목별 분석함

○ 인보험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손해보험은 기업재산보험, 가계재산보험, 자동차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농업보험, 기타보험(운송보험, 특종보험 등)으로 분류해 기술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5. 호주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 2020년 1/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약 158억 호주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함
- 2020년 1/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한 약 202억 호주달러임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이 모두 증가함

〈표 30〉 호주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수입보험료	금액	17,333	19,777	18,165	18,200	73,475	15,782
	증가율 ¹⁾	-4.9	-15.7	-8.8	-7.8	-9.7	-8.9
생명보험	금액	8,025	7,691	7,411	7,073	30,200	6,033
	증가율	-12.1	-35.9	-25.3	-24.2	-25.2	-24.8
손해보험	금액 ²⁾	9,308	12,086	10,754	11,127	43,275	9,749
	증가율	2.3	5.4	7.5	6.9	5.6	4.7
지급보험금	금액	15,608	13,680	15,126	15,589	60,003	20,249
	증가율	13.8	-11.7	-3.9	-4.9	-2.2	29.7
생명보험	금액	9,524	8,571	9,653	9,560	37,308	13,183
	증가율	11.5	-24.0	-11.3	-8.3	-9.3	38.4
손해보험	금액	6,084	5,109	5,473	6,029	22,695	7,066
	증가율	17.6	21.1	12.8	1.0	12.3	16.1

주: 1) 전년 동기 대비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호주 APRA

나. 생명보험

〈지급률〉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 지급률은 전년 동기 대비 99.8%p 상승한 218.5%를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한 약 60억 호주달러였으나 지급보험금은 38.4% 증가한 약 132억 호주달러를 기록함

〈표 31〉 호주 생명보험 지급률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수입보험료	금액	8,025	7,691	7,411	7,073	30,200	6,033
	증가율 ¹⁾	-12.1	-35.9	-25.3	-24.2	-25.2	-24.8
지급보험금	금액	9,524	8,571	9,653	9,560	37,308	13,183
	증가율	11.5	-24.0	-11.3	-8.3	-9.3	38.4
지급률 ²⁾		118.7	111.4	130.3	135.2	123.5	218.5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호주 APRA

〈자산운용〉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 1,963억 호주달러에서 1,787억 달러로 감소함
- 총자산 중 주식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44.9%와 3.7%에서 39.6%와 3.6%로 하락함
- 총자산 중 현금 및 예금, 채권, 재보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3.9%, 37.5%, 5.2%에서 4.2%, 40.7%, 6.2%로 상승함

〈표 32〉 호주 생명보험회사 자산구성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1/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금	9,914	4.4	8,162	4.2	7,783	3.9	7,561	3.9	7,454	4.2
투자자산	200,668	88.4	170,658	87.0	170,593	86.4	170,040	86.6	150,767	84.3
- 채권	79,472	35.0	72,936	37.2	73,960	37.4	73,665	37.5	72,747	40.7
- 주식	109,749	48.4	89,019	45.4	88,353	44.7	88,162	44.9	70,784	39.6
- 부동산	10,608	4.7	7,715	3.9	7,206	3.6	7,204	3.7	6,354	3.6
- 기타	840	0.4	989	0.5	1,075	0.5	1,009	0.5	882	0.5
기타자산	7,228	3.2	7,143	3.6	8,000	4.1	8,492	4.3	9,403	5.3
재보험자산	9,154	4.0	10,103	5.2	11,129	5.6	10,294	5.2	11,141	6.2
총자산	226,965	100.0	196,066	100.0	197,505	100.0	196,388	100.0	178,764	100.0

주: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임
자료: 호주 APRA

〈생명보험 실적〉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6.6% 감소한 약 8억 호주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3.1%p 증가한 -14.9%를 기록함
○ 자본은 213억 호주달러로 전분기 대비 2.1%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9.6% 증가(개선)함

〈표 33〉 호주 생명보험회사 실적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4/4	1/4	2/4	3/4	4/4	1/4
당기순이익	금액	-119	512	201	-10	-997	-802
	증가율 ¹⁾	-117.5	45.5	-62.5	-106.2	737.8	-256.6
자본	금액	22,133	22,174	22,487	22,435	21,818	21,360
	증가율 ²⁾	-1.3	0.2	1.4	-0.2	-2.8	-2.1
총자산	금액	217,841	226,965	196,066	197,505	196,388	178,764
	증가율 ²⁾	-4.4	4.2	-13.6	0.7	-0.6	-9.0
자본이익률 ³⁾		-2.1	9.2	3.6	-0.2	-18.0	-14.9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3) 연율화 수치임(해당 분기(당기순이익 × 4 / 자본) × 100)

자료: 호주 APRA

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97억 호주달러로 집계됨

○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종목별 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배상책임보험과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5%와 4.1% 감소하였음

○ 기업성 재산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9억 호주달러로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임

■ 가계성 보험이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51.8%를 차지함

○ 가계성 재산보험과 개인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가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4.1%, 27.7%를 기록함

〈표 34〉 호주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가계성 재산보험	보험료	2,189	2,336	2,330	2,431	9,286	2,347
	증가율	3.9	5.4	6.5	4.9	5.2	7.2
	구성비	23.5	19.3	21.7	21.8	21.5	24.1
개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2,602	2,645	2,659	2,493	10,399	2,698
	증가율	4.9	5.0	6.0	3.1	4.8	3.7
	구성비	28.0	21.9	24.7	22.4	24.0	27.7
기업성 재산보험	보험료	823	1,484	1,315	1,452	5,074	912
	증가율	9.6	14.9	14.1	15.6	14.0	10.8
	구성비	8.8	12.3	12.2	13.0	11.7	9.4
상업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572	838	667	705	2,782	604
	증가율	4.4	5.1	7.2	4.0	5.2	5.6
	구성비	6.1	6.9	6.2	6.3	6.4	6.2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920	745	904	814	3,383	796
	증가율	-2.5	-17.5	-0.4	-0.5	-5.3	-13.5
	구성비	9.9	6.2	8.4	7.3	7.8	8.2
일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515	785	636	647	2,583	571
	증가율	2.6	8.4	5.3	6.1	5.9	10.9
	구성비	5.5	6.5	5.9	5.8	6.0	5.9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265	819	596	744	2,424	372
	증가율	-8.0	8.9	38.0	26.1	17.6	40.4
	구성비	2.8	6.8	5.5	6.7	5.6	3.8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245	993	352	318	1,908	235
	증가율	0.4	12.6	8.6	0.0	7.9	-4.1
	구성비	2.6	8.2	3.3	2.9	4.4	2.4
주택담보대출 신용보험	보험료	182	209	225	274	890	229
	증가율	-12.5	-8.7	2.3	20.2	0.6	25.8
	구성비	2.0	1.7	2.1	2.5	2.1	2.3
기타 특종	보험료	995	1,232	1,070	1,249	4,546	985
	증가율	-2.7	6.9	2.4	6.2	3.4	-1.0
	구성비	10.7	10.2	9.9	11.2	10.5	10.1
합계	보험료	9,308	12,086	10,754	11,127	43,275	9,749
	증가율	2.3	5.4	7.5	6.9	5.6	4.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호주 APRA

〈손해율〉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보유손해율¹⁶⁾은 전년 동기 대비 8%p 상승한 85%를 기록함
 - 2020년 1/4분기 자동차 배상책임보험과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의 보유손해율은 각각 110%와 98%를 기록함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p 상승한 112%를 기록함
 - 2020년 1/4분기 기업성 재산보험,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및 주택담보대출신용보험 합산비율은 각각 121%, 121%, 206%를 기록함

16) 보유손해율(Net Loss Ratio)이란 보유발생보험금(Net Incurred Claims)를 보유경과보험료(Net Earned Premium)로 나눈 값을 의미함

〈표 35〉 호주 손해보험 보유손해율과 사업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1/4
가계성 재산보험	보유손해율	80	50	54	96	81
	사업비율	28	26	28	27	26
	합산비율	108	76	81	123	107
개인 자동차보험	보유손해율	70	71	68	75	76
	사업비율	20	18	21	19	19
	합산비율	90	89	89	94	95
기업성 재산보험	보유손해율	88	65	47	69	84
	사업비율	41	39	36	37	37
	합산비율	130	104	83	106	121
상업용 자동차보험	보유손해율	73	66	64	64	74
	사업비율	25	25	25	22	24
	합산비율	98	91	89	86	98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보유손해율	102	48	99	47	110
	사업비율	10	11	12	15	12
	합산비율	112	59	111	62	121
일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보유손해율	58	81	76	59	95
	사업비율	30	27	31	25	30
	합산비율	88	108	107	84	125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유손해율	83	68	75	71	91
	사업비율	20	20	22	15	17
	합산비율	103	88	98	86	107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보유손해율	101	89	106	49	98
	사업비율	16	18	14	17	15
	합산비율	117	107	120	67	113
주택담보대출 신용보험	보유손해율	46	49	44	35	39
	사업비율	11	11	12	8	167
	합산비율	57	60	56	43	206
기타 특종	보유손해율	52	54	51	52	66
	사업비율	40	38	42	38	37
	합산비율	91	92	93	90	103
합계	보유손해율	77	63	66	69	85
	사업비율	25	24	26	24	27
	합산비율	102	87	92	93	112

주: 보유손해율(Net Loss Ratio)이란 보유발생보험금(Net Incurred Claims)을 보유경과보험료(Net Earned Premium)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호주 APRA

〈자산운용〉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전체 운용자산은 전분기 702억 호주달러에서 703억 호주달러로 상승함

○ 2020년 1/4분기 채권형 운용자산이 손해보험 운용자산의 7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채권형 운용자산에 이어 간접투자자산의 비중은 15.2%, 대출채권은 3.7%, 주식형 자산 1.3%, 부동산 0.2%임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은 -0.5%로 전년 동기 대비 8.2%p 감소함

○ 손해보험회사의 직접투자자산 운용수익률은 3.2%이며 간접투자자산의 운용수익률은 -20.5%로 나타남

〈표 36〉 호주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1/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채권형 운용자산	54,438	78.4	54,549	78.1	53,981	77.9	54,429	77.5	55,496	78.9
-현금 및 예금	4,802	6.9	4,226	6.1	4,410	6.4	4,405	6.3	5,086	7.2
-회사채	16,043	23.1	15,907	22.8	15,130	21.8	13,938	19.8	13,528	19.2
-국채	21,671	31.2	21,997	31.5	21,918	31.6	22,956	32.7	23,777	33.8
-기타 유가증권	11,923	17.2	12,420	17.8	12,524	18.1	13,129	18.7	13,105	18.6
주식형 운용자산	1,448	2.1	1,460	2.1	1,407	2.0	1,324	1.9	939	1.3
-상장 후순위 채권	279	0.4	279	0.4	280	0.4	283	0.4	243	0.3
-비상장후순위 채권	276	0.4	245	0.4	238	0.3	227	0.3	43	0.1
-상장주식	819	1.2	862	1.2	816	1.2	739	1.1	577	0.8
-비상장주식	74	0.1	73	0.1	73	0.1	75	0.1	76	0.1
간접투자자산	10,809	15.6	11,059	15.8	10,900	15.7	11,100	15.8	10,714	15.2
-현금 및 예금	1,215	1.7	1,790	2.6	1,042	1.5	1,094	1.6	1,747	2.5
-채권	6,132	8.8	5,832	8.4	6,381	9.2	6,175	8.8	5,599	8.0
-주식	2,054	3.0	2,041	2.9	2,095	3.0	2,391	3.4	1,964	2.8
-부동산	950	1.4	935	1.3	918	1.3	961	1.4	947	1.3
-기타	457	0.7	460	0.7	465	0.7	478	0.7	457	0.6
부동산	112	0.2	111	0.2	113	0.2	119	0.2	117	0.2
대출채권	2,193	3.2	2,197	3.1	2,435	3.5	2,855	4.1	2,609	3.7
기타자산	451	0.6	450	0.6	441	0.6	435	0.6	435	0.6
운용자산	69,450	100.0	69,827	100.0	69,277	100.0	70,261	100.0	70,310	100.0
투자수익률	7.7	-	7.1	-	4.7	-	0.0	-	-0.5	-
-직접투자수익률	7.2	-	6.9	-	4.7	-	-0.4	-	3.2	-
-간접투자수익률	10.9	-	8.1	-	5.2	-	2.1	-	-20.5	-

자료: 호주 APRA

〈손해보험 실적〉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7.9% 감소한 약 9억 호주달러 적자를 기록함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17.4%p 감소한 -16.3%를 기록함
○ 자본이 224억 호주달러로 전분기 대비 4.2%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 또한 전분기 대비 1,579.3% 감소함

〈표 37〉 호주 원수손해보험회사 실적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4/4	1/4	2/4	3/4	4/4	1/4
당기순이익	금액	170	555	1,332	821	63	-932
	증가율 ¹⁾	-81.0	34.4	-5.9	-15.4	-62.9	-267.9
자본	금액	23,163	23,245	24,349	23,865	23,424	22,447
	증가율 ²⁾	-3.2	0.4	4.7	-2.0	-1.8	-4.2
총자산	금액	110,421	111,425	114,629	114,017	115,644	118,275
	증가율 ²⁾	1.9	0.9	2.9	-0.5	1.4	2.3
자본이익률 ³⁾		2.9	9.6	22.4	13.6	1.1	-16.3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3) 연율화 수치임(해당 분기(당기순이익 × 4 / 자본) × 100)

자료: 호주 APRA

조사 개요 및 출처

- 호주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 퇴직연금(Superannuation),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다룸
- 호주의 생명보험상품은 호주의 소득보상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음
 - 호주의 생명보험상품은 소득보상체계¹⁷⁾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소득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65세 이전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민간 소득보상상품을 통해 영구적·일시적으로 소득을 보장받음
 - 개인연금도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개인연금 보험료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 포함하지 않음
 - 퇴직연금제도하에서 사용자가 납부한 부분은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분류됨
 - 퇴직연금의 사용자 법정기여율은 9.5%(2020년 기준)이며, 2025년에는 사용자의 법정기여율이 12%까지 상승할 예정임
- 본고에서는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호주 APRA는 생명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보험료만 나타냄
 - 호주는 90년대부터 저축성상품을 판매를 하지 않아 생명보험상품의 대부분이 보장성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17)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3층 체계(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로 구성되어 있음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수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운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20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송운아·한성원 2020.1
 2020-2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 김세중·김혜란 2020. 4
 2020-3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6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운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량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량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호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정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이슈보고서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윤성훈 2020.1
- 2020-2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김동겸 2020.3
- 2020-3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6
- 2020-4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 이상우 2020.6
- 2020-5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강성호·정인영 2020.7
- 2020-6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 김석영·이소양 2020.8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점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2020-1 공제보험 현황 조사 / 최창희·홍민지 2020.4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제 12호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20 / KIRI, 2020.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제3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 KIRI, 2020.2
제3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9/ KIRI, 2020.5
제3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20/ KIRI, 2020.9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점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점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점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2020-1 코로나 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 2020.4
 2020-2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20.6
 2020-3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20.7
 2020-4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 조용운 2020.8
 2020-5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 김해식·노건엽·황인창 2020.9
 2020-6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 - 사회안전망 / 정성희·송윤아·강성호·기승도·장윤미 2020.9
 2020-7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V) - 보험분쟁과 법제 / 황현아·손민숙 2020.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해외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해외 보험동향』 2020년 가을호 (통권 3호)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2714-0482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글로벌보험센터(☎3775-909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